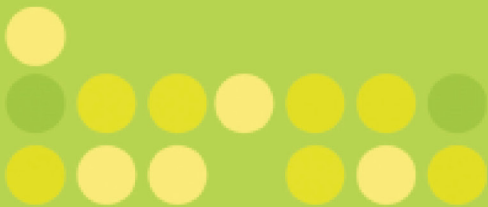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www.welfare.seoul.kr



＝ 연구진 ＝

연구책임 : 현명이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연구위원)

＝ 자문위원 ＝

신원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선미 (집희망주거복지지원센터 소장)

＝ 실무위원 ＝

김도진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원장)

임도영 (영등포보현의집 원장)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소장)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12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

연 · 구 · 요 · 약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여러 나라의 노숙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접근 방법의 특징은 주거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서울시, 2014).
-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체계가 하나의 법률로 정의되었음. ‘노숙인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거리와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었던 정책 대상을 보다 확대하였으며 노숙인 정책의 목표, 방향,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음(보건복지부, 2012).
- 그러나 노숙인 정책의 주요 지원체계는 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노숙인의 재발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숙인 자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숙인 정책의 본래 목적에는 미흡한 정책임. 따라서 노숙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한적, 일시적 정책을 넘어서는 지역사회정착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의 재노숙예방과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위해 서울시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인 노숙인의 경제활동 현황,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요구, 기타의 내용으로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또한 현장 실무자, 노숙인을 심층면접하여 서울시 노숙인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자문위원회

-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연구의 방향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검토, 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표 검토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노숙인 프로그램(고용, 주거, 일상생활 등) 현황 검토, 노숙인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시스템 검토, 복지서비스 방안을 도출함.

□ 실무위원회

-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제공, 사례관리 등 전방위적 접근의 필요성,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실천현장 기대효과 등을 제기함.

□ 문헌연구

-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선진사례 등을 분석하였음. 또한 서울시 종합계획의 방향, 분야별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 도출에 반영함.

□ 욕구조사

-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요 내용 도출을 위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며, 단신남성 노숙인, 모자가구 노숙인 등 180명이 참여하였음.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응답자 일반사항, 살고 있는 주택, 경제활동,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욕구, 사회적 관계, 주거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조사함.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 외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병행·실시하였음.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상은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실무자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임. 실무자 총 4명, 입주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거주 목적(지역사회정착 관점 vs 주택의 관점), 거주지 이전욕구, 사례관리의 유형, 지역사회정착에 어려움점,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임.

□ 연구추진체계

-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연구방향성 및 내용 구성을 위한 자문·실무위원회 개최, 주거지원프로그램 대상인 노숙인 욕구조사 및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 문헌연구, FGI, 욕구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심사분석 및 내부평가를 통한 의견수렴 후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함.

2. 노숙인 현황 및 실태

1) 노숙인 규모

- 서울시 노숙인 규모는 2013년 5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764명, 시설노숙인은 3,671명으로 총 4,435명이었으며, 2013년 7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973명, 시설노숙인은 3,674명으로 총 4,647명으로 증가하였음. 2013년 10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871명, 시설노숙인은 3,562명으로 총 4,43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 1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536명, 시설노숙인은 4,087명으로 총 4,623명으로 증가하였음.

2) 노숙인 시설유형과 프로그램

- 노숙인자활시설은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임.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정착하는데 있음.
- 노숙인재활시설은 노숙인의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재활은 다양한 복지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의학적·교육적 차원을 위한 치료와 훈련과 더불어 사회통합

에 이르는 지원들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노숙인 재활시설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노숙인 요양시설은 만성질환으로 육체적 거동이 어렵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케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숙인 급식 시설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상담보호센터 또는 드롭인센터로 불렸으며, 노숙인 입소시설 만으로는 거리노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물품제공, 생활유지에 관한 지원, 시설입소 의뢰기능, 일시잠자리 제공, 급식제공 등 점차 서비스가 확대되었음.
- IMF 이후 노숙인 정책의 일환으로 쪽방거주자를 ‘잠재적인 노숙인’으로 간주하고 쪽방상담소를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였음.

3) 서울시 노숙인 지원서비스

□ 노숙인 시설보호 서비스

- 서울시 노숙인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음. 노숙인 시설과 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노숙인 시설은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로 구분됨. 주거지원프로그램은 자활의 집, 그룹홈, 매입임대주택, 희망원룸, 임시주거로 나뉘며 2013년 12월 현재, 노숙인 시설의 정원은 3,794명이며 실인원은 3,478명임. 주거지원프로그램은 86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 서비스

-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 2013년 현재 572명이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 대상이며 이중 445명이 주거유지상태임.
- 서울시 노숙인 자활의 집은 69명, 노숙인 임시주거는 162명, 노숙인 그룹홈은 116명, 매입임대주택은 481명, 노숙인 희망원룸은 41명이 거주하고 있음.

□ 일자리지원 서비스

- 서울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노숙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자립기반을 촉진하고 있음. 기존의 특별자활과 일자리갯기 사업을 등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노숙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숙인 일자리 지원제도는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노숙인, 주거지원 대상자 등임.
- 노숙인일자리갯기 사업과 특별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현황은 2012년 기준 총 1,018명이며, 노숙인일자리갯기에 396명, 특별자활사업에 622명이 참여하였음.

4) 국내외 노숙인 복지제도

□ 국내 노숙인복지정책

-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정책의 흐름은 크게 과거 부랑인복지시설운영에 집중되어있던 것이 1990년대 외환위기에 따른 거리노숙인 증가상황 이후 현대적 노숙인복지체계구축과 체계화과정으로 개편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노숙인 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 대응모색의 시기에는 노숙인에 대한 종합적인 단일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시설을 이용한 보호만이 아니라 주거, 자활과 직업, 의료, 급식 및 현장지원 등 필수적인 영역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법제화되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임시주거비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자활의집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

- 영국은 “주택법”에서 ‘홈리스’를 ‘주택이 없는 실질적인 거리생활자 뿐만 아니라 28일 이내에 거리생활에 처할 위험이 있는 자,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홈리스로 인정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홈리스에 대한 정의는 주택과 관련된 기준 이외에도 가족관계, 가구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은 국가 중심의 사회주택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음. 주거취약자는 물론 홈리스를 예방하기 위해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1977년 주거법(Housing Act or Homeless Persons Act)이 제정되면서 주거취약자와 홈리스에게 영구적인 주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회주택이 확산되면서 시설보호중심의 케어서비스가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로 개발되었는데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Supporting People), 서포티드 하우스링(Supported Housing), 서포티브 하우스링(Supportive Housing), 셸터드 하우스링(Sheltered Housing)이 대표적임.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은 취약한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거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통합한 것임. 서포티드 하우스링은 지원이 필요한 노인,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있는 자,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자, 학습장애자, 교도소 출소자와 범죄우려가 있는 자, 단신 홈리스 등 다양한 집단이 생활하고 있음. 중앙정부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은 노인, 장애인, 홈리스, 취약 청소년 및 성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김혜승, 2012).

□ 미국

- 미국의 홈리스 문제에 대한 출발은 홈리스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으로부터임. 1987년 제정된 맥킨니법은 법제정 당시 15개의 새로운 연방재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7개의 기존 프로그램을 홈리스지원에 맞도록 개편·확충함.
-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를 받는, 주거안정에 위협을 느끼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됨(김혜승, 2012).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주택바우처 가구들은 가족관련 서비스(가정폭력, 정신적 위기 상황 등의 문제 해결 지원, 가구(furniture)지원, 이웃과의 갈등해소 지원 등), 경제적 자립증대 지원(직장 소개,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재정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김혜승, 2012).

□ 독일

- 독일의 노숙인 복지에 대한 공공영역의 접근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 노숙인의 개별적인 특수성과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이 있을 경우, 그 적절성을 심사하고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은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험을 통해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노숙인의 경우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노숙 등 주거관련 위급상황에 처한 자, 사회부조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대상임. 주거상실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조치, 노숙인 시설 장기 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상담 및 주거지원,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한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김혜승, 2012).

3. 욕구조사 결과분석

-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연구를 위하여 노숙인 대상 매입임대주택, 희망원룸, 임시주거 입주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음. 기관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열린여성센터, 자활주거복지센터, 흰돌회, 햇살보금자리이며 입주자 180명이 욕구조사에 참여하였음.

1) 조사개요

-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욕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 욕구조사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180명,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노숙인 18명,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의 담당자 4명이 참가함.

-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세군서대문 사랑방, 열린여성센터, 자활주거복지센터, 환돌회, 햇살보금자리이며 조사기간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됨.

2)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 노숙인의 일반사항은 연령, 성별, 최종학력, 혼인관계, 기초수급여부, 거주하는 주택 유형, 거주지역, 거주기간으로 구성됨. 조사에 참여한 노숙인의 성별은 남성이 125명(69.4%), 여성이 55명(30.6%)이며 평균연령은 52세로 최소연령은 23세, 최고연령은 78세임.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미혼이 71명(39.4%), 이혼이 58명(32.2%), 기혼(재혼포함)이 29명(16.1%), 사별이 10명(5.6%), 별거가 7명(3.9%)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은 무학, 졸업, 중퇴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57명(31.7%), 고등학교 중퇴가 21명(11.7%), 중학교 졸업이 19명(10.6%), 초등학교 졸업이 18명(10.0%), 대학교 졸업이 16명(8.9%)의 순으로 나타남. 77.2%의 노숙인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기초수급여부는 비수급이 116명(64.4%), 일반수급자가 47명(26.1%), 조건부수급자가 8명(4.4%)로 나타남.
- 주택유형은 매입임대주택이 160명(88.9%), 희망원룸이 1명(0.6%), 임시주거 2명(1.1%), 기타가 15명(8.3%)이며, 기타의 주요 내용은 고시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은 은평구가 35명(19.4%), 서대문구가 24명(13.3%), 강동구와 중랑구가 각각 15명(8.3%), 강남구 14명(7.8%), 강서구 13명(7.2%), 구로구 12명(6.7%), 마포구 10명(5.6%), 관악구 9명(5.0%), 서초구 7명(3.9%), 성북구와 송파구가 각각 4명(2.2%)으로 나타남.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여성노숙인쉼터가 있는 곳으로 인접한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분포되어 있음. 노숙인 매입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비용, 생활물가가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강서구, 은평구에 밀집되어 있음.
- 거주기간은 6개월 이하, 7개월~12개월이하, 13개월~24개월 이하, 25개월~36개월이하, 37개월~48개월 이하, 49개월~60개월, 61개월 이상으로 구분. 61개월 이상이 42명

(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24개월이 29명(16.1%), 49개월~60개월이 28명(15.6%), 25개월~36개월이 22명(12.2%), 37개월~48개월이 22명(12.2%)으로 나타났고 입주자 평균 거주기간은 43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3) 경제활동

□ 근로여부

- 지난 1년 간 근로여부에 대해서 ‘근로하고 있다’는 107명(59.4%), ‘근로하고 있지 않다’는 73명(40.6%)으로 나타남. 근로한 노숙인의 평균기간은 9.68개월이며,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는 53명(49.6%), 6개월이 16명(15.0%), 10개월이 14명(13.1%)로 나타남.
- 지난 1년 간 근로를 경험이 있는 노숙인의 월평균 소득은 109.26만원이며, 노숙인의 현재일자리는 공공근로(서울시일자리사업, 자활사업포함)가 32명(29.9%), 기타가 21명(19.6%), 건설일용직, 사무직, 경비원이 각각 11명(10.3%)으로 나타났으며 식당일 7명(6.5%), 사회적일자리 4명(3.7%), 공장근로자 4명(3.7%)으로 나타남. 반면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41명(56.2%), ‘나이가 많거나 어려서’가 12명(16.4%),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6명(8.2%), 기타가 8명(11.0%),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가 3명(4.1%)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주요 내용은 알콜중독, 육아문제, 임신, 자녀 부양, 주민등록 말소 등임.

□ 월수입

- 지난 한달 간(2014.8.31 기준) 월수입이 있는 노숙인은 116명(64.4%), 월수입이 없는 노숙인은 64명(35.6%)으로 나타남. 이중 월수입이 있는 노숙인의 주 수입원은 스스로 번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 공적 급여, 가족 및 친지의 도움, 종교·복지단체 지원, 연금 등임.

□ 월지출

- 지난 한달 간(2014.8.31 기준) 월지출은 주거비, 식비, 보건의료비, 여가활동비, 자녀교육(양육)비, 부채상환, 저축,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주거비는 17.11만원, 식비는 22.93만원, 보건의료비는 11.05만원, 여가활동비는 13.49만원, 자녀교육(양육)비는

28.20만원, 부채상환은 28.37만원, 저축은 33.30만원, 기타는 23.05만원이며 합계는 91.73만원으로 나타남.

□ 부채규모

- 부채가 있는 노숙인은 89명(49.4%), 부채가 없는 노숙인은 91명(50.6%)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두고 있다’는 36명(40.4%), ‘상환하고 있다’는 33명(37.1%), ‘신용회복/개인회생 중이다’가 12명(13.5%), ‘파산면책 진행중이다’는 2명(2.2%), 기타는 6명(3.7%)임.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충당’이 30명(33.7%),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이 28명(31.5%), ‘의료비 충당’이 3명(3.4%), ‘보증을 잘못 서서’가 9명(10.1%), ‘주민등록 도용’이 3명(3.4%), ‘기타서류명의 도용’이 2명(2.2%), 기타는 14명(15.7%)이며 기타는 자녀교육비, 자녀생활비, 주택보증금 등으로 나타남.

4)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

□ 지역사회정착 기본적 욕구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 욕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대해 ‘지역사회정착의 욕구가 있다’가 132명(73.3%), ‘지역사회정착의 욕구가 없다’는 48명(26.7%)으로 나타남.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관련 서비스’가 74명(56.1%), ‘사회적지지 서비스’가 11명(8.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43명(32.6%)으로 나타남.

□ 주택관련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중 거쳐찾기’가 29명(22.0%),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중 계약’은 9명(6.8%), ‘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이 48명(36.4%), ‘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구비, 지원서비스 연결)’이 9명(6.8%), ‘주택생활 유지하기(도배, 주택보수 등)’가 15명(11.4%), ‘공과금 등 감

액서비스 정보제공'이 9명(6.8%),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10명(7.6%)으로 나타남.

□ 사회적지지 서비스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회적지지 서비스는 '심리적인 지지와 상담'이 33명(25.0%), '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이 22명(12.2%), '지역사회참여와 활동'이 16명(12.1%), '복지관련 정보 제공'이 50명(27.8%),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안내, 대면, 접근 및 연락'이 7명(3.9%)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생활상담'이 17명(12.9%), '취업알선'이 35명(26.5%), '민원대행'이 5명(3.8%), '이발, 세탁, 목욕'이 5명(3.8%), '급식, 부식지원'이 12명(9.1%), '건강검진 지원'이 8명(6.1%), '의료비 지원'이 16명(12.1%), '간병서비스'가 1명(0.8%), '주거비 지원'이 28명(21.2%), '여가생활 지원'이 1명(0.8%)으로 나타남.

5) 관계 및 만족도

□ 지역사회/이웃주민과의 관계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뢰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평균 2.14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1.61점, '일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는 2.23점으로 나타나 신뢰에 대한 항목의 경우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네트워크는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2.91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는 2.78점, '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는 2.97점으로 네트워크는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프로그램 만족도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주택 및 임시주거 입주 후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 '전반적인 생활', '자활의지', '심리적 안정', '가족관계 회복', '전반적인 주거환경', '이웃주민과의 관계',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임. 먼저, '전반적인 생활'에서는

3.63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일(빨래, 청소 등)’의 만족도는 3.54점, ‘부엌일(식사준비 등)’의 만족도는 3.55점, ‘저축 및 생활비 절약’ 만족도는 3.28점으로 나타남. ‘자활의지 강화’의 만족도는 3.60점, ‘심리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3.51점,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만족도는 3.30점이며 ‘전반적인 거주환경’만족도는 3.57점이며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46점, ‘주위환경’은 3.51점으로 나타남.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3.37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만족도는 3.73점으로 나타남.

6) 소결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를 살펴본 결과 입주자의 73.3%가 지역사회에게 지속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이 필요로 하는 주택관련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한 ‘거처찾기’, ‘계약’, ‘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 ‘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구비, 지원서비스 연결)’ 등임.
- 또한, 사회적지지 서비스로는 ‘심리적인 지지와 상담’, ‘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참여와 활동’, ‘복지관련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생활상담’, ‘취업알선’, ‘민원대행’ 등임.
-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수준은 ‘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2.14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1.61점)’, ‘일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2.23점)’ 등의 신뢰 보다는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2.91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2.78점)’, ‘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2.97점)’ 등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생활’에서는 3.63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일(빨래, 청소 등)’의 만족도는 3.54점, ‘부엌일(식사준비 등)’의 만족도는 3.55점, ‘저축 및 생활비 절약’ 만족도는 3.28점으로 나타남. ‘자활의지 강화’의 만족도는 3.60점, ‘심리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3.51점,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만족도는 3.30점이며 ‘전반적인 거주환경’만족도는 3.57점이며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46점, ‘주위환경’은 3.51점으로 나타남.

-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3.37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만족도는 3.73점으로 나타나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활의지 강화, 심리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분석

-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실무자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무자는 총 4명, 입주자는 18명이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함.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주요내용은 첫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목적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지역사회정착의 관점과 단순한 거주 목적인 주택의 관점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둘째, 거주지 이전의 욕구, 셋째,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의 사례관리 여부와 유형, 넷째,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점, 다섯째,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1)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 일반현황

- 현장전문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 단신남성 노숙인 대상 현장전문가 2명, 모자가구 노숙인 대상 현장전문가 1명, 여성노숙인 대상 현장전문가 1명이 참여함.
- 노숙인대상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일선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였고 입주자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정착의 요건 등에 대해 인터뷰함. 첫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목적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지역사회정착의 관점과 단순한 거주 목적인 주택의 관점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둘째, 거주지 이전의 욕구, 셋째,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의 사례관리 여부와 유형, 넷째,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점, 다섯째,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주요 내용

-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노숙인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 사업의 실패,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은 이들에게 현재의 불안한 상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향후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 기반이 될 수 있음.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 주택지역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처음 정착하게 된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음. 단신남성노숙인보다 모자가정의 경우 지역사회정착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 교육문제, 교우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관계, 네트워크를 중요시 하고 매입임대주택 거주 목적이 지역사회정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단신남성노숙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히 거주개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단신남성노숙인은 부양가족, 자녀 등이 없이 홀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의 관계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따라서 단신남성노숙인은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직장과의 거리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소통은 없으며 단절, 분리되어 있음.
- 거주지 이전의 욕구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단신남성노숙인이 해당되고 그 주요 이유는 경제활동, 일자리 등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음. 따라서 선택권이 넓은 강남권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노숙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매입임대주택 실무자들은 정기적인 입주자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모임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입주자 관리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들은 이러한 사례관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입주자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관의 물품지원, 지지 등은 선호하지만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개입(간섭이라고 생각함) 등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 사례관리자 보다는 동일공간에 입주하고 있는 동거인 또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또 다른 입주자 상호간의 관계가 더 밀착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의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소통 및 관계형성으로 나타남. 단신남성노숙인의 경우, 가족해체, 가족과의 단절, 오랜기간 동안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여 이웃과의 교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등이 어렵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등은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입임대주택 현장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미약하지만 자치회 모임, 또는 직장 내 동료등과 간헐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예를 들면 3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데 금융자산(3,000만원), 근로소득(3인가구 230만원)의 기준은 이들의 근로의욕과 저축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정책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에 문화, 사회관계, 신용회복 등의 지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이들의 자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도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2) 노숙인 포커스그룹인터뷰

□ 일반현황

- 노숙인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단신남성노숙인 14명과 모자가정 여성노숙인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이들 대부분은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여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매입임대주택은 대부분이 강서구, 은평구 등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비용이 저렴하고 생활물가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의 주택에 만족하고 있었음. 장기간의 노숙과 시설생활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가족과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음.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시설의 노후화, 교통접근성 저하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 단신남성노숙인과 모자가구 노숙인의 경우 거주지 이전욕구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임. 단신남성노숙인의 경우, 일자리 획득 기회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회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청·장년층에 해당하고 있었으며 고연령층의 경우, 일자리 획득 기회가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물가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전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모자가구의 경우, 주택의 근거리에서 일자리를 얻어 근로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교우관계,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를 보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근로하고 자원봉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음.
-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사례관리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주택에 관한 정보, 교육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물품지원, 안부확인, 자치 모임 등 기관 위주의 사례관리보다는 노숙인 측면에서 실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또는 지원을 원하고 있음. 예를 들면 다양한 일자리 정보, 노후된 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 형성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임.
-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운 점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지적함. 매입임대주택은 각각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이 모여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 상호간 교류와 소통이 없고 이로 인해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상호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에서 사회관계나 네트워크 형성은 시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거공간과 일자리 외에도 정서적지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웃 및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함. 노숙인의 경우, 지역사회정착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착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사회부적응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타인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등의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3) 소결

- 현장전문가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어려움 등을 의견수렴하였음. 다음 표는 현장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주요내용과 노숙인이 언급하는 주요내용으로 매입임대주택 거주목적과 지역사회 정착의 어려운 점, 개선방안은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거주지 이전욕구와 사례관리는 차이점을 보임.

〈표 iv-1〉 포커스그룹인터뷰 주요내용

구분	현장전문가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거주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노숙인 : 주택관점 • 가구단위 노숙인 : 지역사회정착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노숙인 : 주택관점 • 가구단위 노숙인 : 지역사회정착관점
거주지 이전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노숙인 : 일자리, 지역경제(물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 가구단위 노숙인 : 사회관계,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노숙인 : 일자리, 지역경제(물가), 주택시설 불량이 영향을 미침 • 가구단위 노숙인 : 자녀교우관계, 사회관계가 영향을 미침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치모임실시, 물품지원 등에 사례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보, 주거환경 개선, 괜찮은 일자리 정보, 교육 욕구 강함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소통과 관계형성이 어렵다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소통과 관계형성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격 완화(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 주거와 일자리정책 병행추진 • 문화, 사회관계, 신용회복 등의 지원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격 완화(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 심리·치유프로그램 • 사회관계 등 프로그램

5.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 노숙인 지원 정책의 대상자기준 검토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기준은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생물학적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숙인은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는 노숙인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노숙인 지원기준이 사회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률적인 시설유형, 운영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과 특수성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적인 노숙인을 양산하고 있음. 따라서 남성과 여성노숙인, 젊은층과 고령층 노숙인, 가족노숙인 등 집단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및 일자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단계적 개입

- 노숙인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단계적 자립지원이 필요함.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인터뷰 결과, 입주 노숙인 대부분이 노숙인시설 퇴소 후 바로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2단계 시스템임. 노숙인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시설(준비과정) ⇒ 매입임대주택(적응과정) ⇒ 지역사회정착 등의 단계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경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요 욕구로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지원을 희망함. 만성적인 노숙생활은 대인관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의 약화를 가져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대인기피,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배제 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함.
- 이웃주민과의 신뢰형성,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소통, 직장동료와의 관계망 형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노숙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주로 거리노숙인을 초점에 두고 추진됨. 거리노숙인의 긴급·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노숙인시설에 머물러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노숙인의 자립이나 자활을 위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서비스로 노숙인을 양산하는 회전문형상이 반복될 뿐임.
-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주거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을 통하여 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대표적인 주거지원제도임. 그러나 운영기관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지원체계를 갖고 있어 운영주체별 격차가 발생함. 주거지원사업과 일자리, 의료서비스, 상담 및 교육서비스 등 사례관리를 접목하여 보다 강화된 모델들을 검토하여야 함.

6.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내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180명)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전문가(4명) 및 노숙인(18명)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함. 욕구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사항, 경제활동,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필요욕구 및 사회관계와 만족도이며,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거주목적, 거주지 이전욕구, 사례관리, 지역사회정착에 어려운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욕구조사 내용 중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59.4%(107명)가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근로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평균 9.68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근로기간 중 월평균 소득은 109.26만원이며 주요 일자리는 공공근로(서울시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 건설일용직 등으로 나타남. 반면 일자리가 없는 주요 이유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56.2%로 나타남.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는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에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한달 간(2014.8.31) 월수입은 116명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03.87만원이었고 스스로 번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공적급여 등으로 나타남. 반면 지난 한달 간(2014.8.31) 월지출액은 91.73만원이며 주거비, 식비, 보건의료비, 여가활동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노숙인은 89명(49.4%)이며, 부채발생 이유로는 생활비 충당, 사업실패(사업비 충당), 보증 등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로 주택관련서비스(56.1%), 일상생활지원서비스(26.7%), 사회적지지 서비스(8.3%)로 나타남. 지역사회 관계 및 주거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신뢰에 해당하는 생활용품(2.14점)·현금(1.61점)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일자리를 소개(2.23점)한다는 낮은 반면, 음식을 나눠먹는다(2.91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한다(2.78점), 담소를 나눈다(2.97점)와 같은 네트워크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3.63점), 자활의지 강화(3.60점), 심리적 안정(3.51점), 가족관계 회복(3.30점), 전반적인 거주환경(3.57점), 이웃주민과의 관계(3.37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3.73점)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남.
- 노숙인과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매입임대주택의 거주 목적, 거주지 이전욕구, 사례관리, 지역사회정착의 어려움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함. 첫째, 매입임대주택의 거주목적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관점에서의 목적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관점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우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위한 지역사회정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둘째, 거주지 이전욕구를 살펴보면 이전에 대한 욕구의 요인은 주거환경, 일자리 등으로 나타나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전욕구가 높았으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주거지 이전욕구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사례관리의 경우, 현장전문가는 지속적인 관심과 안부확인, 물품지원 등이 노숙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반면 노숙인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교육, 자치모임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물품지원 등도 현실에 맞는 주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음. 넷째, 지역사회정착의 어려움점으로는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소통 및 관계의 단절을 제기함. 다섯째,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방안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준완화를 통해 이들의 근로의욕과 저축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켜야 하고, 주거지원과 일자리정책의 병행추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등이 이루어져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목 ·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4
3. 연구추진체계	6
II. 노숙인 현황 및 실태	7
1. 노숙인 규모	9
2. 노숙인 시설유형과 프로그램	12
3. 서울시 노숙인 지원서비스	18
4. 국내외 노숙인 복지제도	26
III. 욕구조사 결과분석	33
1. 조사개요	35
2.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37
3. 경제활동	41
4.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	58
5. 관계 및 만족도	65
6. 소결	69
IV.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분석	71
1.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74
2. 노숙인 포커스그룹인터뷰	80
3. 소결	85

V.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87
1. 노숙인 지원 정책의 대상자기준 검토	89
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단계적 개입	89
3. 지역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89
4. 노숙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90
VI. 요약 및 결론	91
■ 참고문헌	95
■ 부 록	97

□ 표 · 목 ·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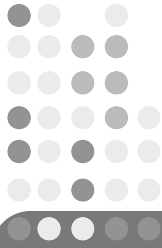
〈표 1-1〉 자문위원회	4
〈표 1-2〉 실무위원회	4
〈표 2-1〉 연도별 노숙인 현황	9
〈표 2-2〉 시·도별 노숙인 현황(2013.12월 기준)	10
〈표 2-3〉 노숙인 시설 현황	11
〈표 2-4〉 서울시 노숙인 규모	12
〈표 2-5〉 노숙인자활시설 프로그램	13
〈표 2-6〉 노숙인자활시설 주요 서비스	13
〈표 2-7〉 노숙인재활시설 프로그램	15
〈표 2-8〉 노숙인요양시설 프로그램	15
〈표 2-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16
〈표 2-10〉 쪽방상당소 프로그램	17
〈표 2-11〉 노숙인 시설 현황	18
〈표 2-12〉 노숙인자활시설 현황	19
〈표 2-13〉 노숙인재활시설 현황	20
〈표 2-14〉 노숙인요양시설 현황	20
〈표 2-15〉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황	20
〈표 2-1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현황	21
〈표 2-17〉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실적(2011~2013년)	21
〈표 2-18〉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신청자 이전 거주 현황	22
〈표 2-19〉 노숙인자활의집 현황	22
〈표 2-20〉 노숙인임시주거 현황	23
〈표 2-21〉 노숙인그룹홈 현황	23
〈표 2-22〉 노숙인매입임대 현황	24
〈표 2-23〉 노숙인희망원룸 현황	24

〈표 2-24〉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25
〈표 2-25〉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실적	25
〈표 2-26〉 주거 취약계층 보호방안	27
〈표 2-27〉 긴급지원제도	28
〈표 3-1〉 조사개요	35
〈표 3-2〉 조사항목 및 척도	36
〈표 3-3〉 인적사항	37
〈표 3-4〉 주택유형	38
〈표 3-5〉 거주지역	39
〈표 3-6〉 거주기간	40
〈표 3-7〉 근로여부	41
〈표 3-8〉 근로기간	41
〈표 3-9〉 월평균 근로소득	42
〈표 3-10〉 현재 일자리	43
〈표 3-11〉 일자리가 없는 이유	44
〈표 3-12〉 일자리 정보 수집경로(1순위)	44
〈표 3-13〉 자격증 유무	45
〈표 3-14〉 월수입(2014.8.31일 기준)	46
〈표 3-15〉 스스로 번돈(2014.8.31일 기준)	47
〈표 3-1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2014.8.31일 기준)	48
〈표 3-17〉 기타 공적 급여(2014.8.31일 기준)	48
〈표 3-18〉 가족 및 친지 도움(2014.8.31일 기준)	49
〈표 3-19〉 종교 복지단체 지원(2014.8.31일 기준)	49
〈표 3-20〉 연금(2014.8.31일 기준)	50
〈표 3-21〉 기타(2014.8.31일 기준)	50
〈표 3-22〉 월지출 (2014.8.31일 기준)	52
〈표 3-23〉 주거비(2014.8.31일 기준)	52
〈표 3-24〉 식비(2014.8.31일 기준)	53
〈표 3-25〉 보건의료비(2014.8.31일 기준)	53
〈표 3-26〉 여가활동비(2014.8.31일 기준)	54

〈표 3-27〉 자녀교육 양육비 (2014.8.31일 기준)	54
〈표 3-28〉 부채상환 (2014.8.31일 기준)	55
〈표 3-29〉 저축 (2014.8.31일 기준)	55
〈표 3-30〉 기타 (2014.8.31일 기준)	56
〈표 3-31〉 부채여부	56
〈표 3-32〉 부채 대처 방법	57
〈표 3-33〉 부채 발생 이유	57
〈표 3-34〉 지역사회정착 욕구	58
〈표 3-35〉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정착 욕구	58
〈표 3-36〉 지역사회정착 희망 지역	59
〈표 3-37〉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정착 희망 지역	59
〈표 3-38〉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60
〈표 3-39〉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60
〈표 3-40〉 가장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	61
〈표 3-41〉 근로여부에 따른 가장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	62
〈표 3-42〉 가장 필요한 사회적지지 서비스	63
〈표 3-43〉 근로여부에 따른 가장 필요한 사회적지지 서비스	63
〈표 3-44〉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64
〈표 3-45〉 근로여부에 따른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65
〈표 3-46〉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	66
〈표 3-47〉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	66
〈표 3-48〉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만족도	68
〈표 3-49〉 근로여부에 따른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만족도	68
〈표 4-1〉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주요 내용	73
〈표 4-2〉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일반현황	74
〈표 4-3〉 노숙인 포커스그룹 일반현황	80
〈표 4-4〉 포커스그룹인터뷰 주요내용	85

그림 · 목 · 차

[그림 2-1] 노숙인재활의 목표	14
[그림 2-2] 독일의 노숙인 복지정책	32



I | 서론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여러 나라의 노숙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접근 방법의 특징은 주거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서울시, 2014).

영국의 ‘홈리스 예방 전략’, 미국의 ‘노숙 문제 해소 전략계획’ 등이 그것이며 노숙인에 대한 주거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예방적 접근방법, 보건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 통합적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홈리스법(The Homelessness Act, 2002)에서는 지방주택당국이 홈리스 예방과 홈리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홈리스 전략은 관련된 다른 정책계획과 연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서종균·김윤이, 2006). 홈리스의 주거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재정착을 위한 사회서비스, 보건, 교육 등의 전략을 통해 홈리스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체계는 하나의 법률로 정의되었다. ‘노숙인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거리와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었던 정책 대상을 보다 확대하였으며 노숙인 정책의 목표, 방향,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그러나 노숙인 정책의 주요 지원체계는 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노숙인의 재발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숙인 자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숙인 정책의 본래 목적에는 미흡한 정책이다. 따라서 노숙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한적, 일시적 정책을 넘어서는 지역사회정착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의 재노숙예방과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거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인 노숙인의 경제활동 현황,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욕구, 기타의 내용으로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또한 현장 실무자, 노숙인을 심층면접하여 서울시 노숙인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1) 자문위원회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를 위하여 관련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방향성 제시, 연구내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견개진 및 조사표 개발을 위한 항목 선정 등이 이루어졌다.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연구의 방향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검토, 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표 검토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노숙인 프로그램(고용, 주거, 일상생활 등) 현황 검토, 노숙인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시스템 검토, 복지서비스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1-1〉 자문위원회

연도	주요내용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방향성,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검토 • 노숙인 대상 욕구조사의 주요 내용 점검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욕구조사를 위한 조사표 검토 및 의견수렴 • 조사표 내용 수정 및 보완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내용 검토 •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합의

2) 실무위원회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제공, 사례관리 등 전방위적 접근의 필요성,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실천현장 기대효과 등을 제기하였다.

〈표 1-2〉 실무위원회

연도	주요내용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방향성,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 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제공, 사례관리 등 전방위적 접근 필요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욕구조사를 위한 조사표 검토 및 의견수렴 • 현장전문가, 노숙인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 검토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조결과 분석 및 보고서 내용 검토 •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실천현장 기대효과

3) 문헌연구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선진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시 종합계획의 방향, 분야별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 도출에 반영하였다.

4) 욕구조사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요 내용 도출을 위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며, 단신남성노숙인, 모자가구 노숙인 등 180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응답자 일반사항, 살고 있는 주택, 경제활동,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욕구, 사회적 관계, 주거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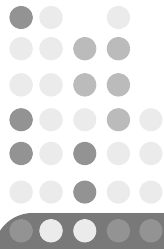
5)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 외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병행·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상은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실무자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이다. 실무자 총 4명, 입주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거주 목적(지역사회정착 관점 vs 주택의 관점), 거주지 이전욕구, 사례관리의 유형, 지역사회정착에 어려움점,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이다.

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연구방향성 및 내용 구성을 위한 자문·실무위원회 개최, 주거지원프로그램 대상인 노숙인 욕구조사 및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한다. 문헌연구, FGI, 욕구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심사분석 및 내부평가를 통한 의견수렴 후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추진내용	일정	주요내용
연구방침 수립 ↓	2014.4월	▶ 연구추진 계획 수립
문헌연구 ↓	2014.4~6월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검토
자문·실무위원회 ↓	2014.5~11월	▶ 연구방향성 및 내용 구성
욕구조사 및 FGI ↓	2014.8~11월	▶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욕구파악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심사분석/내부평가 ↓	2014.11월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보고서 발간	2014.12월	▶ 정책제안 및 시사점 도출



Ⅱ | 노숙인 현황 및 실태 |



Ⅱ. 노숙인 현황 및 실태

1. 노숙인¹⁾ 규모

우리나라 전체 노숙인 규모는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12,656명이다. 자활시설에 2,095명, 일시보호시설에 844명, 거리노숙인이 1,197명이며, 재활·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은 8,520명이다. 시·도별 노숙인 규모는 서울이 4,481명, 대구가 1,314명, 경기도 1,117명 등으로 대도시에 노숙인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 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5,785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12,656
자활	3,763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2,095
일시보호	-	-	-	-	-	-	-	-	844
거리	959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1,197
재활·요양	11,063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8,520
쪽방주민	-	-	-	6,119	6,394	6,232	5,991	5,891	5,992

시·도별 노숙인 시설은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쪽방상담소이며, 서울이 53개소, 부산이 14개소, 대구가 9개소, 인천이 8개소, 광주 2개소, 대전 8개소, 경기도 18개소, 강원도 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1) 노숙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①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②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③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함.

〈표 2-2〉 시·도별 노숙인 현황(2013.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자활	일시보호	거리	재활요양	쪽방주민
합계	12,656	2,095	844	1,197	8,520	5,992
서울	4,481	1,273	431	531	2,246	3,275
부산	898	165	73	90	570	827
대구	1,314	136	20	143	1,015	858
인천	764	39	-	134	591	453
광주	377	16	186	25	150	-
대전	344	99	28	19	198	579
울산	33	22	6	5	-	-
세종	114	-	-	-	114	-
경기	1,117	215	94	226	582	-
강원	297	58	6	-	233	-
충북	804	14	-	-	790	-
충남	46	29	-	17	-	-
전북	217	29	-	-	188	-
전남	759	-	-	-	759	-
경북	405	-	-	-	405	-
경남	520	-	-	-	520	-
제주	166	-	-	7	159	-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3.12월 기준)

〈표 2-3〉 노숙인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종합지원센터 (구, 상담보호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구, 노숙인쉼터)	노숙인재활·요양시설 (구, 부랑인시설)	쪽방 상담소
합계	151	10	8	67	56	10
서울	53	2	4	30	12	5
부산	14	2	-	5	5	2
대구	9	1	1	5	1	1
인천	8	-	-	3	4	1
광주	2	-	-	1	1	
대전	8	1	1	4	1	1
울산	1	-	-	1	-	
세종	1	-	-	-	1	
경기	18	3	1	10	4	
강원	8	-	1	4	3	
충북	4	-	-	1	3	
충남	1	-	-	1	-	
전북	5	-	-	2	3	
전남	7	-	-	-	7	
경북	5	-	-	-	5	
경남	4	-	-	-	4	
제주	3	1	-	-	2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3.12월 기준)

서울시 노숙인 규모는 2013년 5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764명, 시설노숙인은 3,671명으로 총 4,435명이었으며, 2013년 7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973명, 시설노숙인은 3,674명으로 총 4,647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871명, 시설노숙인은 3,562명으로 총 4,43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 1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536명, 시설노숙인은 4,087명으로 총 4,623명으로 증가하였다.

노숙인 규모를 측정하는 시기별로 하절기에는 거리노숙인이 증가하고 시설노숙인은 감소하는 반면 동절기에는 거리노숙인의 규모는 감소하고 시설노숙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서울시 노숙인 규모

(단위 : 명)

구분	거리노숙인	시설 노숙인	합계
2013. 5월	764	3,671	4,435
2013. 7월	973	3,674	4,647
2013. 10월	871	3,562	4,433
2014. 1월	536	4,087	4,623

자료 : 서울시,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2014)

주 : 시설노숙인은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응급잠자리, 응급폭방에 거주하는 노숙인을 포함한 수치임.

2. 노숙인 시설유형과 프로그램

2012년 노숙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시설유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으며 시설입소위주의 정책이 주거지원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숙인 시설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 시설들의 역할과 프로그램들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적절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숙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1)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의 목적은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정착하는데 있다.

〈표 2-5〉 노숙인자활시설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공동프로그램(자립중심과 생활중심 자활시설)	일상생활지원, 의료지원, 사회성훈련, 문화와 여가향유, 심리상담, 신용회복상담, 사례관리, 주거지원, 지역사회와 유대
전문프로그램(자립중심 자활시설)	취업상담, 직업기능훈련, 일자리 연계, 공동작업장, 사회적 기업 운영

자료 :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남기철 외(2013)

노숙인자활시설의 서비스는 공통의 프로그램과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통프로그램은 자립과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은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 일자리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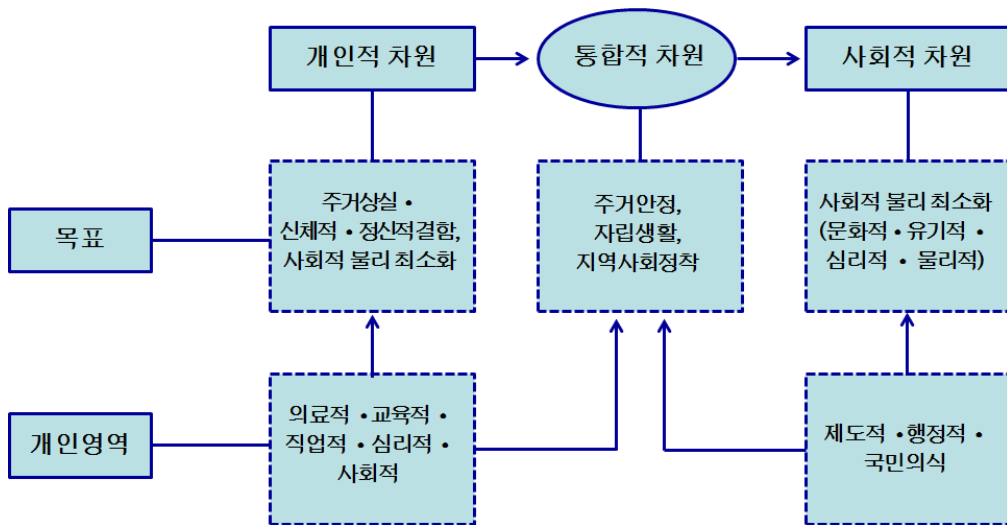
〈표 2-6〉 노숙인자활시설 주요 서비스

구분	목적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 노숙인의 자립과 탈노숙 - 재노숙 방지	- 초기사정→실천계획 수립→단계적 서비스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사후관리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 지원	- 기본적 생활과 정서적 건강, 문화생활 영위	- 일상생활지도, 문화체험, 지역사회행사 및 활동 참여 등
직업재활	- 사회적참여 - 고용기회 획득 및 경제적 자립	- 직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 직업기술훈련 연계 및 직업알선 - 취업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회성향상기술	- 심리적열등감, 소외감, 사회적 장애 해소 - 자신감 강화 및 타인과의 관계 적응력 향상	- 사회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의사소통, 대화기술 등
주거지원	- 거리생활 탈피, 거리노숙예방, 주거불안환경 극복	-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 임시주거비지원사업 - 보증금지원제도, 임대주택 제공 등

자료 :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남기철 외(2013)

2)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은 노숙인의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활은 다양한 복지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의학적·교육적 차원을 위한 치료와 훈련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이르는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숙인 재활시설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욕구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재활과 사회적 차원의 재활을 포괄한 통합적 재활, 즉 사회적응능력 향상, 자립생활 및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1] 노숙인재활의 목표

〈표 2-7〉 노숙인재활시설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의료재활	정신장애 및 물질사용 장애 : 약물 및 증상관리교육, 정신건강교육 기타 신체장애 및 지적장애 : 의학적 진단에 따라 각 장애별 의료재활
직업재활	취업준비교육,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생활훈련, 취업장 개발, 임시·일시·독립취업유도, 고용주 및 취업장 방문
자립생활 또는 일상생활기술훈련	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지식과 기술습득
심리·사회재활	상담,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및 사회기술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여가활동, 동아리활동, 체육활동
지역사회와의 유대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회행사와 활동 참여
기타	성교육, 인권 교육 등

자료 :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남기철 외(2013)

3)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의 목적은 만성질환으로 육체적 거동이 어렵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케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숙인 급식시설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8〉 노숙인요양시설 프로그램

구분	내용
신체적 생활원조	식사, 배설, 청결, 수면, 탈의, 이동 등
문화적 생활원조	독서, 학습, 종교, 취미,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적 생활원조	교제, 행사, 일, 외출, 외박 등
생활환경정비·생활경영·관리	요리, 의복관리, 주거정리, 정돈 등 개인생활관리, 생활환경위생 등
건강관찰, 유지	전신관찰, 호소, 이상생활과약, 통원수발, 기능훈련원조 등
상담·조언	이야기상대, 상담, 수발정보 제공 등
응급처치, 종말기 호스피스	관찰, 처치, 연락, 의료관계자와의 연계 등
입원자 관리	정기방문을 통한 욕구파악 및 문제해결

자료 :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남기철 외(2013)

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상담보호센터 또는 드롭인센터로 불렸다(남기철 외, 2013). 당시 노숙인 입소시설 만으로는 거리노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물품제공, 생활유지에 관한 지원, 시설입소 의뢰기능, 일시잠자리 제공, 급식제공 등 점차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거리노숙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하여 현장지원(outreach)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탈거리노숙을 유인하는 역할로서 주된 기능은 ‘탈거리노숙을 위한 현장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숙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2-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구분	내용
상담	- 장·단기 생활시설 입소 지원, 임시주거비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의료, 일자리, 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	- 복잡한 욕구 또는 다차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 사례에 대한 점검과 결과정리 등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이용자정보, 초기사정정보 등 입력
행정지원	- 노숙인의료급여 신청 등 지원
물품제공 및 위생서비스	- 기본적인 생활유지서비스 이용 등
급식·야간잠자리	- 적절한 급식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 야간잠자리 제공
주거지원	-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연계, 임시주거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활용 안내 등
고용·의료지원	- 근로의지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연계 - 이용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질병유무 확인 등

자료 :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남기철 외(2013)

5) 쪽방상담소

IMF 이후 노숙인 정책의 일환으로 쪽방거주자를 ‘잠재적인 노숙인’으로 간주하고 쪽방상담소를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쪽방상담소의 기능은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서비스는 상담 및 사례관리, 행정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이며 부가서비스는 기본생활지원, 사회문화생활지원, 지역특화지원으로 구분된다.

〈표 2-10〉 쪽방상담소 프로그램

구분	분야	내용
기본 서비스	상담 및 사례관리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기본적인 활동으로 원외·원내 상담 및 사례관리
	행정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복지 서비스의 연계
	주거지원	거리노숙예방, 거주안정 및 주거성향을 위한 주거지원(임대료지원, 임대주택정보제공 및 입주지원 등)
	의료지원	보건 및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
	고용지원	취업알선,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공공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일자리사업단운영 등
부가 서비스	기본생활지원	급식·도시락·밀반찬, 의류, 생필품지원, 세탁실, 샤워실운영, 이미용 지원
	사회문화생활지원	주민모임 조직화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제공
	지역특화지원	지역별 주민특성 및 기관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자료 :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남기철 외(2013)

3. 서울시 노숙인 지원서비스

1) 노숙인 시설보호 서비스

노숙인 시설과 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노숙인 시설은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 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로 나뉘고 주거지원프로그램은 자활의 집, 그룹홈, 매입임대 주택, 희망원룸, 임시주거로 구분된다. 2013년 12월 현재, 노숙인 시설의 정원은 3,794명이며 실인원은 3,478명이다. 주거지원프로그램은 86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노숙인 시설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노숙인 시설	자활시설	1,646	1,307
	재활시설	337	294
	요양시설	1,181	1,134
	종합지원센터	265	269
	일시보호	365	474
	소계	3,794	3,478
주거지원프로그램	자활의집	-	69
	그룹홈	-	116
	매입임대주택	-	481
	희망원룸	-	41
	임시주거	-	162
	소계	-	869
계		3,794	4,347

〈표 2-12〉 노숙인자활시설 현황

(단위 : 명)

번호	구분	정원	현원
1	수송보현의집	34	28
2	사랑의집	130	34
3	신당사회복지관	15	10
4	소중한사람들	44	41
5	화엄동산	17	16
6	내일의집	29	22
7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134	94
8	가나안쉼터	133	169
9	신내노숙인쉼터	15	9
10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77	63
11	장위종합사회복지관	22	22
12	정릉복지관 희망의집	22	30
13	십자가쉼터	25	8
14	아침을여는집	22	20
15	천애원희망의집	22	11
16	인덕희망의집	23	12
17	환돌회	31	29
18	구세군서대문사랑방	43	39
19	열린여성센터	34	29
20	구세군일죽쉼터	43	32
2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6	6
22	길가온혜명	125	39
23	청담광명의집	12	15
24	영등포보현의집	189	170
25	두레 사랑의쉼터	25	12
26	희망나무	39	38
27	광야홈리스센터	94	79
28	반석희망의집	45	59
29	대한성공회살림터	48	18
30	강동희망의집	15	14
31	양평쉼터	86	104
32	나래자활쉼터	47	35
	계	1,646	1,307

자료 : 서울통계(2013)

〈표 2-13〉 노숙인재활시설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비전트레이닝센터	189	180
아가페의집	25	23
늘푸른자활의집	60	41
수선화의 집	14	17
목동의집	20	6
우리집공동체	20	13
겨자씨들의 둠지	9	14
계	337	294

자료 : 서울통계(2013)

〈표 2-14〉 노숙인요양시설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시립은평의마을	1,100	1,070
다일작은천국	49	37
마더테레사의집	14	9
임마누엘의집	18	18
계	1,181	1,134

자료 : 서울통계(2013)

〈표 2-15〉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0	178
브릿지종합지원센터	65	91
계	265	269

자료 : 서울통계(2013)

〈표 2-1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영등포보호현의집	100	86
인정복지관만나샘	25	130
소중환사람들	20	22
햇살보금자리	70	100
옹달샘드롭인센터	150	136
계	365	474

자료 : 서울통계(2013)

2) 노숙인 주거지원 서비스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3년 현재 572명이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 대상이며 이중 445명이 주거유지 상태였다.

〈표 2-17〉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실적(2011~2013년)

(단위 : 명, %)

구분	계획인원	지원인원	주거유지	주거유지율
2011년	300	322	194	60.2
2012년	350	490	390	79.6
2013년	350	572	445	77.8

자료 :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2014)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신청자의 이전 거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현재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신청자 중 거리노숙인은 332명(58.0%), 시설거주자는 25명(4.4%), 쪽방, 고시원거주자는 98명(17.1%), 기타가 117명(20.5%)이었다.

〈표 2-18〉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신청자 이전 거주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거리	시설	쪽방·고시원	기타
2011년	322(100.0)	281(87.3)	24(7.5)	15(4.7)	2(0.6)
2012년	490(100.0)	337(68.8)	49(10.0)	73.9(14.9)	31(6.3)
2013년	572(100.0)	332(58.0)	25(4.4)	98(17.1)	117(20.5)

자료 :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서울특별시(2014)

주 : 기타는 교정시설 출소자, 퇴원환자 등

서울시 노숙인을 위한 장기적인 주거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활의 집은 69명, 노숙인 임시주거는 162명, 노숙인 그룹홈은 116명, 매입임대주택은 481명, 노숙인 희망원룸은 41명이 거주하고 있다.

〈표 2-19〉 노숙인자활의집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원
신당사회복지관	4
내일의집	29
비전트레이닝센터	1
가나안쉼터	1
열린여성센터	2
영등포보현의집	10
두레 사랑의쉼터	2
반석희망의집	19
양평쉼터	1
계	69

자료 : 서울통계(2013)

〈표 2-20〉 노숙인임시주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2
브릿지종합지원센터	28
옹달샘드롭인센터	2
햇살보금자리	64
거리의천사들	26
계	162

자료 : 서울통계(2013)

〈표 2-21〉 노숙인그룹홈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
내일의집	7
비전트레이닝센터	44
아침을여는집	3
정릉복지관 희망의집	6
환돌회	3
열린여성센터	6
구세군일죽쉼터	2
갈가온혜명	5
옹달샘드롭인센터	11
희망나무	17
반석희망의집	8
계	116

자료 : 서울통계(2013)

〈표 2-22〉 노숙인매입임대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107
게스트하우스	7
비전트레이닝센터	47
아가페의집	1
가나안쉼터	19
자활주거복지센터	59
환돌회	53
구세군서대문사랑방	26
열린여성센터	33
길가온혜명	27
햇살보급자리	102
계	481

자료 : 서울통계(2013)

〈표 2-23〉 노숙인희망원룸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원
희망원룸	41
계	41

자료 : 서울통계(2013)

3) 일자리지원 서비스

서울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노숙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자립기반을 축전하고 있다. 기존의 특별자활과 일자리갯기 사업을 등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노숙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숙인 일자리 지원제도는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노숙인, 주거지원 대상자 등이다.

노숙인일자리갯기 사업과 특별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현황은 2012년 기준 총 1,018 명이다. 노숙인일자리갯기에 396명, 특별자활사업에 622명이 참여하였다.

〈표 2-24〉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구분	새희망사다리1단계-재활구호 (기존의 특별자활)	새희망사다리2단계-자활희망 (기존의 일자리갯기사업)
목적	- 근로능력미약자의 최저생계유지 - 거리생활자의 임시주거 비용 마련 기회제공	- 근로를 통한 자활유도
근로유형	- 노숙인 보호시설 및 주변청소 - 급식보조, 야간상담활동 보조 등 - 보호시설 주변 취로사업	- 녹지관리, 공원치오, 공공시설물치오, 복지업무보조, 자원재활용 등
근로감독	- 노숙인 보호시설	- 개별사업장(사업주)

자료 : 서울정보소통광장, 2012년 10월말 기준

〈표 2-25〉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759	980	1,015	870	1,026	1,018
노숙인일자리갯기	409	375	324	350	447	396
특별자활사업	350	605	691	520	579	622

자료 : 서울정보소통광장, 2012년 10월말 기준

4. 국내외 노숙인 복지제도

1) 국내 노숙인복지정책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정책의 흐름은 크게 과거 부랑인복지시설운영에 집중되어있던 것이 1990년대 외환위기에 따른 거리노숙인 증가상황 이후 현대적 노숙인복지체계구축과 체계화 과정으로 개편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랑인보호 대책시기로 이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에 해당한다. 1970년대까지는 통제적 개입이 중심이었던 시기로 부랑인에 대해 사회통제와 질서유지를 위해 격리하고 단속하는 것이 가장 주된 양상이었다. 1980년대에는 부랑인 시설도 통제에서 복지로의 성격전환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부랑인시설도 복지부소관으로 이전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는 노숙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은 여전히 부랑인복지시설에 대규모 수용을 통한 격리적 상황이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경제위기와 함께 사회적 개입의 양상도 달라졌다. 노숙인쉼터의 대량설치와 자활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직노숙인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하지만 이 지원체계는 응급의 임시방편적인체계로 구성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종교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2000년대 초기로 자활·재활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해간 시기로 볼 수 있다. 쉼터라는 시설중심의 체계만으로는 노숙인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속에서 상담보호센터와 거리 진료체계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보호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이후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의 정비를 통해 법적제도화가 이루어졌으나 이와동시에 노숙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실상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정책프로그램이 이원화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때 들어서 임시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노숙인을 주요대상으로 보장되면서 주거관련프로그램의 보장이 두드러졌다.

최근 노숙인 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 대응모색의 시기에는 노숙인에 대한 종합적인 단일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시설을 이용한 보호만이아니라 주거, 자활과 직업, 의료, 급식 및 현장지원 등 필수적인 영역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법제화되었다(남기철 외, 201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이다. 빈곤가구 외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원된다.

〈표 2-26〉 주거 취약계층 보호방안

구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노숙인
생계	○	○	×	×
주거	○	○	×	×
의료	○	○	○	×
교육	○	○	○	×
해산	○	○	○	×
장제	○	○	○	×
자활조건부과	○	○	×	×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4

(2)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는 (6가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²⁾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숙인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첫째,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둘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셋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넷째,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째,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섯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표 2-27〉 긴급지원제도

종류		지원내용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자료 : 긴급지원사업안내, 2014

(3) 임시주거비지원사업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주거지원과 공공보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고, 거리노숙인 중 공공복지서비스 연계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임시주거비를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의 경우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및 생활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3개월 이내의 월세 지원을 통해 단신자용 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복지서비스와의 연계나 지역사회정착과정을 도모한다.

(4)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단신자용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쪽방비닐하우스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노숙인과 관련되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5) 공공임대주택사업

기존 자활의 집은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확장되고 있는 노숙인과 광의의 홈리스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사업 운영이나 예산, 전달체계에 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10년의 사업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량과 성과는 매우 미미하여 시범사업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2) 영국

영국은 “주택법”에서 ‘홈리스’를 ‘주택이 없는 실질적인 거리생활자 뿐만 아니라 28일 이내에 거리생활에 처할 위험이 있는 자,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홈리스로 인정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홈리스에 대한 정의는 주택과 관련된 기준 이외에도 가족관계, 가구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영국의 노숙인 지원은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 여성쉼터(women's refugee), 동절기임시 쉼터(cold weather shelter), 회전쉼터(rolling shelter), 나이트스톱(Nightstop) 사업 등 다양한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호스텔(logn-term hostel), 서포티드 하우스(supported housing), 하숙 사업(lodging scheme) 등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5).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주택이 확산되면서 시설보호중심의 케어서비스가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주택제공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영역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기도 하다. 2002년 홈리스법 제정으로 노숙인의 주거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주요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거서비스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주고 주거와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사시 전기와 수도연결, 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 유지관리, 임대료 지불, 수선 요청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로 개발되었는데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Supporting People), 서포티드 하우스(supported housing),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ing), 셸터드 하우스(sheltered housing)이 대표적이다.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은 취약한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거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통합한 것이다. 서포티드 하우스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있는 자,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자, 학습장애자, 교도소 출소자와 범죄우려가 있는 자, 단신 홈리스 등 다양한 집단이 생활하고 있다.

중앙정부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은 노인, 장애인, 홈리스, 취약 청소년 및 성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혜승, 2012).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택마련, 주택거주 기술,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이며 비영리조직인 Shelter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집주인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김혜승, 2012).

(1)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Supporting People Programme)

2003년 도입된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관련 지원 서비스이다. 이전까지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제공 되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다. 주거비 보조를 통해서 지불되던 서포티드 하우스 관리보조금, 관찰보호 거주보조금, 사회안전국 재정착 보조금, 주택개량기구 보조금 등이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되었다.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수준 높고 전략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취약계층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비영리조직, 주택조합,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협력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과 같이 장기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있거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시설입소자 등이다.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은 주거와 관련한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거 관련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 동의하에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둘째, 주거 관련 지원은 취약계층이라는 특정 목표 대상에 국한한다. 셋째, 대상은 성인이어야 한다. 넷째, 이용자 자신의 거처에서 최대한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 지불하기,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수행하기, 거처 내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파악하는 방법, 거처의 수선 및 개선하는 방법, 안전하고 아늑한 집 만들기, 이웃과 잘 지내기 등이다. 다섯째, 주거 관련 서비스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부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남원석 외, 2010).

(2) 서포티드 하우스(Supported Housing)

서포티드 하우스는 다양한 개별적인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면서 영구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조직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택조합이 협력해서 여성, 난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 특정 분야의 서포티드 하우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3) 서포티브 하우징(Supportive Housing)

서포티드 하우징과 유사한 개념인 서포티브 하우징은 서포티드 하우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홈리스를 위한 임시거처나 가정폭력을 피해온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피난처로 제공되는 호스텔 등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없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거처들도 포함하는 주거형태이다.

(4) 셸터드 하우징(Sheltered Housing)

셸터드 하우징은 입주자들이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이 정해진 거처를 말한다.

3)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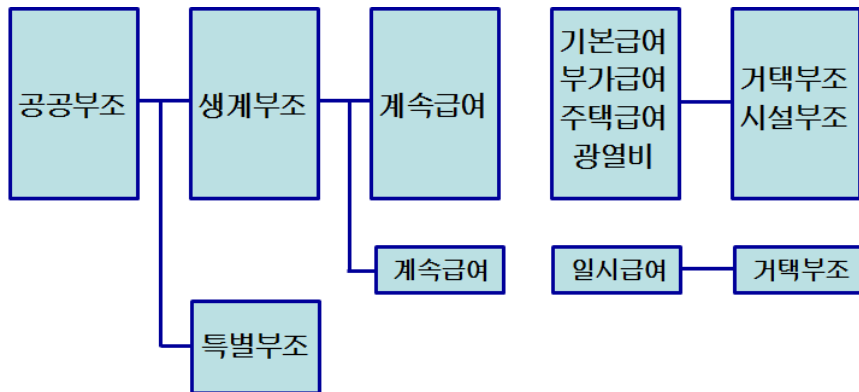
미국의 홈리스 문제에 대한 출발은 홈리스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으로부터이다. 1987년 제정된 맥킨니법은 법제정 당시 15개의 새로운 연방재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7개의 기존 프로그램을 홈리스지원에 맞도록 개편·확충하였다. 8개의 연방부처가 이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활동하며, 전체적인 감독기구로서 Interagency Council on the Homeless라는 독립된 연방조직이 만들어졌다(남기철, 2009).

미국의 노숙인 지원대책은 주택도시개발성(HUD :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보호의연속성CoC : Continuum ofCare)”을 주요한 모토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 개념하에 지역사회의 각부분들이 함께 모여 노숙인 지원체계를 구성하도록 하며 연방정부, 주(州)정부 시(市)자치체 비영리기관들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1993년에는 “노숙상태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연방계획”을 발표하였고 CoC과정을 통한 지역사회조직활동은 미국의 노숙종결을 위한 전국연합(NAEH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의 활동으로 연결되어졌다.

미국의 노숙문제에 대한 접근은 과거 개인주의적 측면에 대한 강조와 응급적 접근에서 주거와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HHS(보건복지성)와 아울러 HUD(주택도시개발성)의 역할이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남기철 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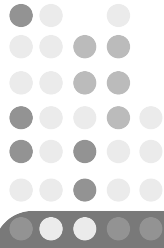
4) 독일

독일의 노숙인 복지에 대한 공공영역의 접근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숙인의 개별적인 특수성과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이 있을 경우, 그 적절성을 심사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통해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노숙인의 경우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2] 독일의 노숙인 복지정책

또한 주거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 있는데 노숙 등 주거관련 위급상황에 처한 자, 사회부조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대상이다. 주거상실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조치, 노숙인 시설 장기 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상담 및 주거지원,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한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김혜승, 2012).



Ⅲ | 옥구조사 결과분석 |



Ⅲ. 욕구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욕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욕구조사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180명,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노숙인 18명,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의 담당자 4명이 참가하였다.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열린여성센터, 자활주거복지센터, 흰돌회, 햇살보금자리이며 조사기간은 2014년 8월부터 10월 까지 진행되었다.

〈표 3-1〉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방법	인원
욕구조사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	180명
포커스그룹인터뷰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	4명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 담당자		18명

욕구조사를 위한 조사항목은 응답자 일반사항, 살고있는 주택, 경제활동,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욕구, 사회적 관계, 주거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등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표 3-2〉 조사항목 및 척도

구분	조사문항	척도
응답자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특성 : 연령, 성별, 최종학력, 혼인관계 - 기초수급여부 	
살고 있는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유형 : 매입임대, 희망원룸, 임시주거, 기타 - 거주지역(서울시 내 자치구) - 거주기간(____년__개월 단위)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여부, 근로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 현재일자리, 일자리정보습득 경로 - 자격증 여부, 자격증(명) - 월평균 수입(액)과 지출(액) : 만원단위 - 부채여부, 부채에 대한 대처, 부채발생이유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정착 욕구, 정착지역 - 주택 : 거처찾기, 계약, 보조적지원, 초기정착지원, 유지, 정보제공 - 사회적지지 : 심리적 지지와 상담, 치유 및 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참여와 활동, 복지관련 정보제공, 기타 - 일상생활지원 : 생활상담, 취업알선, 민원대행, 급식및부식지원, 건강검진지원 등 - 기타 : 저축관리, 생활비신청및지원, 이웃주민과의 갈등 문제해결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 생활용품 빌리기, 돈 빌리기, 일자리소개 - 네트워크 : 같이식사하기, 어려운일의논하기, 답소나누기 	5점리커트 척도
주거지원프로그램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생활 : 가사일, 부업일, 저축및생활비 절약 - 자활의지 강화 - 심리적 안정 - 가족관계 회복 - 전반적인 거주환경 : 주택시설, 주위환경 - 이웃주민과의 관계 - 동거인과의 관계 	5점리커트 척도

2.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노숙인의 일반사항은 연령, 성별, 최종학력, 혼인관계, 기초수급여부, 거주하는 주택유형, 거주지역, 거주기간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노숙인의 성별은 남성이 125명(69.4%), 여성이 55명(30.6%)이며 평균연령은 52세로 최소연령은 23세, 최고연령은 78세였다.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미혼이 71명(39.4%), 이혼이 58명(32.2%), 기혼(재혼포함)이 29명(16.1%), 사별이 10명(5.6%), 별거가 7명(3.9%)으로 나타났다.

〈표 3-3〉 인적사항

(단위 : 명)

구분	빈도(%)	구분	연령
성별		평균연령	52세
남성	125(69.4)	최소연령	23세
여성	55(30.6)	최대연령	78세
계		180(100.0)	

최종학력은 무학, 졸업, 중퇴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57명(31.7%), 고등학교 중퇴가 21명(11.7%), 중학교 졸업이 19명(10.6%), 초등학교 졸업이 18명(10.0%), 대학교 졸업이 16명(8.9%)의 순으로 나타났다. 77.2%의 노숙인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기초수급여부는 비수급이 116명(64.4%), 일반수급자가 47명(26.1%), 조건부수급자가 8명(4.4%)로 나타났다.

〈표 3-3〉 계속

(단위 : 명)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혼인관계		최종학력	
미혼	71(39.4)	무학	7(3.9)
기혼(재혼포함)	29(16.1)	초등학교 중퇴	7(3.9)
사실혼	2(1.1)	초등학교 졸업	18(10.0)
별거	7(3.9)	중학교 중퇴	10(5.6)
이혼	58(32.2)	중학교 졸업	19(10.6)
사별	10(5.6)	고등학교 중퇴	21(11.7)
기타	3(1.7)	고등학교 졸업	57(31.7)
기초수급여부		전문대학 중퇴	2(1.1)
비수급	116(64.4)	전문대학 졸업	8(4.4)
일반수급자	47(26.1)	대학교 중퇴	11(6.1)
조건부수급자	8(4.4)	대학교 졸업	16(8.9)
특례수급자	0(0.0)	대학원 졸업 이상	1(0.6)
무응답	9(5.0)	무응답	3(1.7)
계		180(100.0)	

〈표 3-4〉 주택유형

(단위 : 명)

주택유형	빈도(%)
매입임대주택	160(88.9)
희망원룸	1(0.6)
임시주거	2(1.1)
기타	15(8.3)
무응답	2(1.1)
계	180(100.0)

주택유형은 매입임대주택이 160명(88.9%), 희망월룸이 1명(0.6%), 임시주거 2명(1.1%), 기타가 15명(8.3%)이며, 기타의 주요 내용은 고시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은평구가 35명(19.4%), 서대문구가 24명(13.3%), 강동구와 중랑구가 각각 15명(8.3%), 강남구 14명(7.8%), 강서구 13명(7.2%), 구로구 12명(6.7%), 마포구 10명(5.6%), 관악구 9명(5.0%), 서초구 7명(3.9%), 성북구와 송파구가 각각 4명(2.2%)으로 나타났다.

〈표 3-5〉 거주지역

(단위 : 명)

거주지역	빈도(%)	거주지역	빈도(%)
강남구	14(7.8)	서초구	7(3.9)
강동구	15(8.3)	성북구	4(2.2)
강북구	1(0.6)	송파구	4(2.2)
강서구	13(7.2)	영등포	1(0.6)
관악구	9(5.0)	용산구	3(1.7)
구로구	12(6.7)	은평구	35(19.4)
노원구	1(0.6)	종로구	1(0.6)
동작구	1(0.6)	중구	1(0.6)
마포구	10(5.6)	중랑구	15(8.3)
서대문구	24(13.3)	무응답	9(5.0)
계		180(100.0)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여성노숙인쉼터가 있는 곳으로 인접한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분포되어 있었다. 노숙인 매입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비용, 생활물가가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강서구, 은평구에 밀집되어 있다. 본 연구의 욕구조사 및 개별면접의 경우에도 주택비용이 저렴한 지역에 편중되어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거주기간은 6개월 이하, 7개월~12개월이하, 13개월~24개월 이하, 25개월~36개월이하, 37개월~48개월 이하, 49개월~60개월, 61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61개월 이상이 42명(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24개월이 29명(16.1%), 49개월~60개월이 28명(15.6%), 25개월~36개월이 22명(12.2%), 37개월~48개월이 22명(12.2%)으로 나타났고 입주자 평균 거주기간은 4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거주기간

(단위 : 명)

거주기간	빈도(%)
6개월 이하	17(9.4)
7개월~12개월	13(7.2)
13개월~24개월	29(16.1)
25개월~36개월	22(12.2)
37개월~48개월	22(12.2)
49개월~60개월	28(15.6)
61개월 이상	42(23.3)
무응답	7(3.9)
계	180(100.0)
평균 거주기간	43개월

3. 경제활동

1) 근로여부

지난 1년 간 노숙인의 근로여부는 다음과 같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근로하고 있다’는 107명(59.4%), ‘근로하고 있지 않다’는 73명(40.6%)으로 나타났다. 근로한 노숙인의 평균기간은 9.68개월이며,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는 53명(49.6%), 6개월이 16명(15.0%), 10개월이 14명(13.1%)로 나타났다.

〈표 3-7〉 근로여부

(단위 : 명)

구분	빈도(%)
근로하고 있다	107(59.4)
근로하고 있지 않다	73(40.6)
계	180(100.0)

〈표 3-8〉 근로기간

(단위 : 명)

구분	빈도(%)	평균
2개월	1(0.9)	9.68개월
3개월	3(2.8)	
4개월	1(0.9)	
5개월	3(2.8)	
6개월	16(15.0)	
7개월	4(3.7)	
8개월	6(5.6)	
9개월	4(3.7)	
10개월	14(13.1)	
11개월	2(1.9)	
12개월	53(49.6)	
계	107(100.0)	

지난 1년 간 근로를 경험이 있는 노숙인의 월평균 소득은 109.26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원~124만원이 34명(31.8%), 50만원~74만원이 18명(16.8%), 75만원~99만원이 16명(15.0%), 150만원~174만원이 16명(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구분	빈도(%)	평균
1만원 ~ 24만원	3(2.8)	109.26만원
25만원 ~ 49만원	3(2.8)	
50만원 ~ 74만원	18(16.8)	
75만원 ~ 99만원	16(15.0)	
100만원 ~ 124만원	34(31.8)	
125만원 ~ 149만원	8(7.5)	
150만원 ~ 174만원	16(15.0)	
175만원 ~ 199만원	1(0.9)	
200만원 이상	8(7.5)	
계	107(100.0)	

노숙인의 현재일자리는 살펴보면, 공공근로(서울시일자리사업, 자활사업포함)가 32명(29.9%), 기타가 21명(19.6%), 건설일용직, 사무직, 경비원이 각각 11명(10.3%)으로 나타났으며 식당일 7명(6.5%), 사회적일자리 4명(3.7%), 공장근로자 4명(3.7%)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간호조무사, 네일샵, 노인일자리사업, 봉제공자근로, 빌딩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41명(56.2%), '나이가 많거나 어려서'가 12명(16.4%),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6명(8.2%), 기타가 8명(11.0%),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가 3명(4.1%)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주요 내용은 알콜중독, 육아문제, 임신, 자녀부양, 주민등록 말소 등이었다.

〈표 3-10〉 현재 일자리

(단위 : 명)

구분	빈도(%)
건설일용직	11(10.3)
식당일	7(6.5)
노점상	0(0.0)
가사도우미	3(2.8)
공장근로자	4(3.7)
농부·어부·광부	0(0.0)
운전	2(1.9)
사회적일자리	4(3.7)
공공근로(서울시일자리사업, 자활사업포함)	32(29.9)
사무직	11(10.3)
자영업	1(0.9)
구두수선	0(0.0)
폐지, 고물수거	0(0.0)
경비원	11(10.3)
기타*	21(19.6)
계	107(100.0)

* 기타는 간호조무사, 네일샵, 노인일자리사업, 봉제공장, 빌딩관리, 서비스업, 이사일용직 등임.

〈표 3-11〉 일자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빈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6(8.2)
직장동료와 불화	0(0.0)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	3(4.1)
나이가 많거나 어려서	12(16.4)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41(56.2)
생각했던 것에 비해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0(0.0)
능력(전문기술)이 없어서	2(2.7)
잘 모르겠다	0(0.0)
직장이 주거지와 멀어서	1(1.4)
기타*	8(11.0)
계	73(100.0)

* 기타는 알콜중독, 육아문제, 임신, 자녀부양, 주민등록 말소임

〈표 3-12〉 일자리 정보 수집경로(1순위)

(단위 : 명)

구분	빈도(%)
이웃	10(5.6)
같은 동료	26(14.4)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	32(17.8)
임대주택운영기관	23(12.8)
고용안정센터	22(12.2)
민간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소	12(6.7)
종교복지단체 상담	6(3.3)
인터넷취업포털서비스	21(11.7)
기타*	20(11.1)
무응답	8(4.4)
계	180(100.0)

* 기타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스스로 정보구함, 학원임

일자리 정보에 대한 수집경로(1순위)는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이 32명(17.8%), 같은 동료
가 26명(14.4%), 임대주택운영기관이 23명(12.8%), 고용안정센터가 22명(12.2%), 인터넷취업
포탈서비스가 21명(11.7%)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보의 수집경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의 자격증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사람이
75명(41.7%),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101명(56.1%)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
류는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건축미장, 공예자격증, 공인중개사, 미용사, 바리스
타, 보육교사, 보일러, 산모도우미, 선반기능사, 워드, 원예, 이용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
사, 전산세무, 정보처리기사, 제빵, 조경, 조리기능사, 중등교사자격증, 컴퓨터활용, 택시, 한
식조리사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3〉 자격증 유무

(단위 : 명)

구분	빈도(%)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	75(41.7)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없다	101(56.1)
무응답	4(2.2)
계	180(100.0)

2) 월수입

지난 한달 간(2014.8.31 기준) 월수입은 ‘스스로변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 ‘가족 및 친지 도움’, ‘종교 복지단체 지원’, ‘연금’, ‘기타’로 구성되었다. 월평균 기준 스스로변돈은 103.8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53.86만원, 기타공적급여는 52.00만원, 가족 및 친지 도움은 40.00만원, 종교 복지단체 지원은 13.33만원, 연금은 37.20만원, 기타는 35.8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14〉 월수입(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7(3.9)
1만원~24만원	4(2.2)
25만원~49만원	30(16.7)
50만원~74만원	32(17.8)
75만원~99만원	21(11.7)
100만원~124만원	47(26.1)
125만원~149만원	11(6.1)
150만원~174만원	16(8.9)
175만원~199만원	5(2.8)
200만원 이상	7(3.9)
소계	163(96.1)
계	180(100.0)

〈표 3-13〉 월수입이 있는 노숙인은 163명(96.1%), 월수입이 없는 노숙인은 7명(3.9%)으로 나타났다. 1만원~24만원이 4명(2.2%), 25만원~49만원이 30명(16.7%), 50만원~74만원이 32명(17.8%), 75만원~99만원이 21명(11.7%), 100만원~124만원이 47명(26.1%), 125만원~149만원이 11명(6.1%), 150만원~174만원이 16명(8.9%), 175만원~199만원이 5명(2.8%), 200만원 이상이 7명(3.9%)이며, 평균 90.8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14〉 ‘스스로 변돈’은 100만원~124만원이 39명(21.7%), 75만원~99만원이 17명(9.4%), 150만원~174만원이 16명(8.9%)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월수입은 103.8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15〉 스스로 번돈(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64(35.6)	
1만원~24만원	5(2.8)	103.87만원
25만원~49만원	9(5.0)	
50만원~74만원	15(8.3)	
75만원~99만원	17(9.4)	
100만원~124만원	39(21.7)	
125만원~149만원	7(3.9)	
150만원~174만원	16(8.9)	
175만원~199만원	2(1.1)	
200만원 이상	6(3.3)	
소계	116(64.4%)	
계	180(100.0)	

지난 한달 간(2014.8.3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균 급여는 53.86만원이었으며 이 중 25만원~49만원이 26명(14.4%), 50만원~74만원이 14명(7.8%)이었다. 기타 공적급여는 1만원~24만원이 2명(1.1%), 25만원~49만원이 1명(0.6%), 150만원~174만원이 1명(0.6%)이며 평균 급여액은 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지 도움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1만원~24만원이 3명(1.7%), 50만원~74만원이 1명(0.6%), 75만원~99만원이 1명(0.6%)으로 평균 40.00만원이었으며, 종교 복지단체 지원이 있는 경우, 금액은 1만원~24만원이 3명(1.7%)으로 평균 13.33만원이었다.

연금수입은 1만원~24만원이 6명(3.3%), 25만원~49만원이 2명(1.1%), 50만원~74만원과 125만원~149만원이 각각 1명(0.6%)으로 평균 37.20만원이었으며,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금액은 1만원~24만원이 8명(4.4%), 25만원~49만원이 2명(1.1%), 100만원~124만원이 3명(1.7%)으로 평균 35.85만원이었다.

〈표 3-1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24(68.9)	
1만원~24만원	6(3.3)	53.86만원
25만원~49만원	26(14.4)	
50만원~74만원	14(7.8)	
75만원~99만원	4(2.2)	
100만원~124만원	3(1.7)	
125만원~149만원	2(1.1)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6(3.3)	
소계	56(31.1)	
계	180(100.0)	

〈표 3-17〉 기타 공적 급여(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76(97.8)	
1만원~24만원	2(1.1)	52.00만원
25만원~49만원	1(0.6)	
50만원~74만원	0(0.0)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1(0.6)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소계	4(2.2)	
계	180(100.0)	

〈표 3-18〉 가족 및 친지 도움(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75(97.2)	
1만원~24만원	3(1.7)	40.00만원
25만원~49만원	0(0.0)	
50만원~74만원	1(0.6)	
75만원~99만원	1(0.6)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1(0.6)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19〉 종교 복지단체 지원(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77(97.2)	
1만원~24만원	3(1.7)	13.33만원
25만원~49만원	0(0.0)	
50만원~74만원	0(0.0)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20〉 연금(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70(94.4)	
1만원~24만원	6(3.3)	37.20만원
25만원~49만원	2(1.1)	
50만원~74만원	1(0.6)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1(0.6)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21〉 기타(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67(92.8)	
1만원~24만원	8(4.4)	35.85만원
25만원~49만원	2(1.1)	
50만원~74만원	0(0.0)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3(1.7)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3) 월지출

월지출은 주거비, 식비, 보건의료비, 여가활동비, 자녀교육(양육)비, 부채상환, 저축, 기타로 구성되었다. 주거비는 17.11만원, 식비는 22.93만원, 보건의료비는 11.05만원, 여가활동비는 13.49만원, 자녀교육(양육)비는 28.20만원, 부채상환은 28.37만원, 저축은 33.30만원, 기타는 23.05만원이며 합계는 91.7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달 간(2014.8.31 기준) 총 지출 금액은 1만원~24만원이 9명(5.0%), 25만원~49만원이 30명(16.7%), 50만원~74만원이 35명(19.4%), 75만원~99만원이 24명(13.3%), 100만원~124만원이 45명(25.0%), 125만원~149만원이 13명(7.2%), 150만원~174만원이 12명(6.7%), 175만원~199만원이 4명(2.2%), 200만원 이상이 6명(3.3%)이며 평균 지출액은 91.23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지출은 1만원~24만원이 127명(70.6%), 25만원~49만원이 29명(16.1%), 50~74만원이 3명(1.7%)이며 평균 17.1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식비 지출은 1만원~24만원이 99명(55.0%), 25만원~49만원이 61명(33.9%), 50~74만원은 7명(3.9%), 75만원~99만원이 1명(0.6%)이며 평균 지출액은 22.93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1만원~24만원이 87명(48.3%), 25만원~49만원이 5명(2.8%), 200만원 이상이 1명(0.6%)이며 평균 지출액은 11.05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비 지출은 1만원~24만원이 76명(42.2%), 25만원~49만원이 5명(2.8%), 50만원~74만원이 1명(0.6%)이며 평균 지출액은 13.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 양육비 지출은 1만원~24만원이 20명(11.1%), 25만원~49만원이 8명(4.4%), 50만원~74만원이 6명(3.3%)이며 평균 지출액은 28.2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 지출은 1만원~24만원이 18명(10.0%), 25만원~49만원이 15명(8.3%), 50만원~74만원이 8명(4.4%)이며 평균 지출액은 28.3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으로 지출한 금액은 1만원~24만원이 48명(26.7%), 25만원~49만원이 23명(12.8%), 50만원~74만원이 14명(7.8%), 75만원~99만원이 2명(1.1%), 100만원~124만원이 3명(1.7%)이며 평균 저축액은 33.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타 금액은 1만원~24만원이 71명(39.4%), 25만원~49만원이 33명(18.3%), 50만원~74만원이 5명(2.8%), 100만원~124만원이 1명(0.6%)이며 평균 지출액은 23.0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22〉 월지출 (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2(1.1)	
1만원~24만원	9(5.0)	91.73만원
25만원~49만원	30(16.7)	
50만원~74만원	35(19.4)	
75만원~99만원	24(13.3)	
100만원~124만원	45(25.0)	
125만원~149만원	13(7.2)	
150만원~174만원	12(6.7)	
175만원~199만원	4(2.2)	
200만원 이상	6(3.3)	
계	180(100.0)	

〈표 3-23〉 주거비(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무응답	21(11.7)	
1만원~24만원	127(70.6)	17.11만원
25만원~49만원	29(16.1)	
50만원~74만원	3(1.7)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24〉 식비(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2(6.7)	
1만원~24만원	99(55.0)	22.93만원
25만원~49만원	61(33.9)	
50만원~74만원	7(3.9)	
75만원~99만원	1(0.6)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25〉 보건의료비(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87(48.3)	
1만원~24만원	87(48.3)	11.05만원
25만원~49만원	5(2.8)	
50만원~74만원	0(0.0)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1(0.6)	
계	180(100.0)	

〈표 3-26〉 여가활동비(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98(54.4)	
1만원~24만원	76(42.2)	13.49만원
25만원~49만원	5(2.8)	
50만원~74만원	1(0.6)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27〉 자녀교육 양육비 (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45(80.6)	
1만원~24만원	20(11.1)	28.20만원
25만원~49만원	8(4.4)	
50만원~74만원	6(3.3)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1(0.6)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28〉 부채상환 (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139(77.2)	
1만원~24만원	18(10.0)	28,37만원
25만원~49만원	15(8.3)	
50만원~74만원	8(4.4)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0(0.0)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29〉 저축 (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90(50.0)	
1만원~24만원	48(26.7)	33,30만원
25만원~49만원	23(12.8)	
50만원~74만원	14(7.8)	
75만원~99만원	2(1.1)	
100만원~124만원	3(1.7)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표 3-30〉 기타 (2014.8.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없음	70(38.9)	
1만원~24만원	71(39.4)	23.05만원
25만원~49만원	33(18.3)	
50만원~74만원	5(2.8)	
75만원~99만원	0(0.0)	
100만원~124만원	1(0.6)	
125만원~149만원	0(0.0)	
150만원~174만원	0(0.0)	
175만원~199만원	0(0.0)	
200만원 이상	0(0.0)	
계	180(100.0)	

4) 부채규모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부채는 다음과 같다. 부채가 있는 노숙인은 89명(49.4%), 부채가 없는 노숙인은 91명(50.6%)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경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냥 두고 있다’는 36명(40.4%), ‘상환하고 있다’는 33명(37.1%), ‘신용회복/개인회생 중이다’가 12명(13.5%), ‘파산면책 진행중이다’는 2명(2.2%), 기타는 6명(3.7%)이다.

〈표 3-31〉 부채여부

(단위 : 명)

구분	빈도(%)
부채가 있음	89(49.4)
부채가 없음	91(50.6)
계	180(100.0)

〈표 3-32〉 부채 대처 방법

(단위 : 명)

구분	빈도(%)
그냥 두고 있다	36(40.4)
상환하고 있다	33(37.1)
신용회복/개인회생 중이다	12(13.5)
파산면책 진행중이다	2(2.2)
기타*	6(6.7)
계	89(100.0)

* 기타는 개인회생준비중, 잘모름, 파산중임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충당'이 30명(33.7%),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이 28명(31.5%), '의료비 충당'이 3명(3.4%), '보증을 잘못 서서'가 9명(10.1%), '주민등록 도용'이 3명(3.4%), '기타서류명의 도용'이 2명(2.2%), 기타는 14명(15.7%)이며 기타는 자녀교육비, 자녀생활비, 주택보증금 등으로 나타났다.

〈표 3-33〉 부채 발생 이유

(단위 : 명)

구분	빈도(%)
생활비에 충당	30(33.7)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	28(31.5)
의료비 충당	3(3.4)
보증을 잘못 서서	9(10.1)
도박때문에	0(0.0)
주민등록 도용	3(3.4)
기타서류명의 도용	2(2.2)
기타*	14(15.7)
계	89(100.0)

* 기타는 자녀교육비, 자녀생활비, 주택보증금임

4.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

1) 지역사회정착 기본적 욕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 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도움 없이 독립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정착의 욕구가 있다’가 132명(73.3%), ‘지역사회정착의 욕구가 없다’는 48명(26.7%)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하고 있는 노숙인과 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 욕구를 살펴보았다. 근로를 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지역사회정착의 욕구가 있는 노숙인은 85명(79.4%), 지역사회정착의 욕구가 없는 노숙인의 22명(20.6%)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의 경우 각각 47명(64.4%), 26명(35.6%)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 보다 지역사회정착의 욕구가 15.0%p 높게 나타났다.

〈표 3-34〉 지역사회정착 욕구

(단위 : 명)

구분	빈도(%)
지역사회정착 욕구 있다	132(73.3)
지역사회정착 욕구 없다	48(26.7)
계	180(100.0)

〈표 3-35〉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정착 욕구

(단위 : 명)

구분	빈도(%)	
	근로하고 있음	근로 안함
지역사회정착 욕구 있다	85(79.4)	47(64.4)
지역사회정착 욕구 없다	22(20.6)	26(35.6)
계	107(100.0)	73(100.0)

지역사회정착의 욕구가 있다고 답한 노숙인의 경우, 정착을 원하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101명(56.1%), ‘가족근처 지역’이 2명(1.1%), ‘직장근처 지역’이 17명(9.4%), ‘타지역’이 12명(6.7%)이었다.

〈표 3-36〉 지역사회정착 희망 지역

(단위 : 명)

구분	빈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101(56.1)
가족근처 지역	2(1.1)
직장근처 지역	17(9.4)
타지역	12(6.7)
계	132(100.0)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정착 희망 지역의 경우, 근로를 하고 있는 노숙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65명(76.5%), ‘가족근처 지역’이 1명(1.2%), ‘직장근처 지역’이 15명(17.6%)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노숙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36명(76.6%), ‘가족근처 지역’이 1명(2.1%), ‘직장근처 지역’이 2명(4.3%)로 나타났다.

〈표 3-37〉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정착 희망 지역

(단위 : 명)

구분	빈도(%)	
	근로하고 있음	근로 안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65(76.5)	36(76.6)
가족근처 지역	1(1.2)	1(2.1)
직장근처 지역	15(17.6)	2(4.3)
타지역	4(4.7)	8(17.0)
계	85(100.0)	47(100.0)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택관련 서비스’는 74명(56.1%), ‘사회적지지 서비스’가 11명(8.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43명(32.6%)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근로를 하고 있는 노숙인은 ‘주택관련 서비스’가 52명(61.2%), ‘사회적지지 서비스’가 8명(9.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22명(25.9%)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은 ‘주택관련 서비스’가 22명(46.8%), ‘사회적지지 서비스’가 3명(6.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21명(44.7%)으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라 필요서비스에 대해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빈도(%)
주택관련 서비스	74(56.1)
사회적지지 서비스	11(8.3)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43(32.6)
기타*	4(2.2)
계	132(100.0)

* 기타는 문화예술서비스임

〈표 3-39〉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빈도(%)	
	근로하고 있음	근로 안함
주택관련 서비스	52(61.2)	22(46.8)
사회적지지 서비스	8(9.4)	3(6.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22(25.9)	21(44.7)
기타	3(3.5)	1(2.1)
계	85(100.0)	47(100.0)

2) 주택관련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중 거쳐찾기’가 29명(22.0%),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중 계약’은 9명(6.8%), ‘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이 48명(36.4%), '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구비, 지원서비스 연결)'이 9명(6.8%), '주택생활 유지하기(도배, 주택보수 등)'가 15명(11.4%), '공과금 등 감액서비스 정보제공'이 9명(6.8%),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10명(7.6%)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른 주택관련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를 하고 있는 노숙인은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중 거쳐찾기'가 22명(25.9%),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중 계약'은 6명(7.1%), '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이 27명(31.8%), '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구비, 지원서비스 연결)'이 6명(7.1%), '주택생활 유지하기(도배, 주택보수 등)'가 8명(9.4%), '공과금 등 감액서비스 정보제공'이 8명(9.4%),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9명(9.4%)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은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중 거쳐찾기'가 7명(14.9%),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중 계약'은 3명(6.4%), '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이 21명(44.7%), '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구비, 지원서비스 연결)'이 3명(6.4%), '주택생활 유지하기(도배, 주택보수 등)'가 7명(14.9%), '공과금 등 감액서비스 정보제공'이 1명(2.1%),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2명(4.3%)으로 나타났다.

〈표 3-40〉 가장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빈도(%)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거쳐찾기)	29(22.0)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계약)	9(6.8)
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	48(36.4)
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구비, 지원서비스 연결)	9(6.8)
주택생활 유지하기(도배, 주택보수 등)	15(11.4)
공과금 등 감액서비스 정보제공	9(6.8)
공공임대주택 정보	10(7.6)
무응답	3(2.3)
계	132(100.0)

〈표 3-41〉 근로여부에 따른 가장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빈도(%)	
	근로하고 있음	근로안함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거처찾기)	22(25.9)	7(14.9)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계약)	6(7.1)	3(6.4)
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	27(31.8)	21(44.7)
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구비, 지원서비스 연결)	6(7.1)	3(6.4)
주택생활 유지하기(도배, 주택보수 등)	8(9.4)	7(14.9)
공과금 등 감액서비스 정보제공	8(9.4)	1(2.1)
공공임대주택 정보	8(9.4)	2(4.3)
무응답	0(0.0)	3(6.4)
계	85(100.0)	47(100.0)

3) 사회적지지 서비스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회적지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인 지지와 상담’이 33명(25.0%), ‘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이 22명(12.2%), ‘지역사회참여와 활동’이 16명(12.1%), ‘복지관련 정보 제공’이 50명(27.8%),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안내, 대면, 접근 및 연락’이 7명(3.9%)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른 사회적지지 서비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하고 있는 노숙인은 ‘심리적인 지지와 상담’이 23명(27.1%), ‘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이 9명(10.6%), ‘지역사회참여와 활동’이 12명(14.1%), ‘복지관련 정보 제공’이 35명(41.8%),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안내, 대면, 접근 및 연락’이 5명(5.9%)으로 나타났다. 근로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은 ‘심리적인 지지와 상담’이 10명(21.3%), ‘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이 13명(27.7%), ‘지역사회참여와 활동’이 4명(8.5%), ‘복지관련 정보 제공’이 15명(31.9%),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안내, 대면, 접근 및 연락’이 2명(4.3%)으로 나타났다.

〈표 3-42〉 가장 필요한 사회적지지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빈도(%)
심리적인 지지와 상담	33(25.0)
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	22(12.2)
지역사회참여와 활동	16(12.1)
복지관련 정보 제공	50(27.8)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안내, 대면, 접근 및 연락	7(3.9)
무응답	4(3.0)
계	132(100.0)

〈표 3-43〉 근로여부에 따른 가장 필요한 사회적지지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빈도(%)	
	근로하고 있음	근로안함
심리적인 지지와 상담	23(27.1)	10(21.3)
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	9(10.6)	13(27.7)
지역사회참여와 활동	12(14.1)	4(8.5)
복지관련 정보 제공	35(41.2)	15(31.9)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안내, 대면, 접근 및 연락	5(5.9)	2(4.3)
무응답	1(1.2)	3(6.4)
계	85(100.0)	47(100.0)

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생활상담’이 17명(12.9%), ‘취업알선’이 35명(26.5%), ‘민원대행’이 5명(3.8%), ‘이발, 세탁, 목욕’이 5명(3.8%), ‘급식, 부식지원’이 12명(9.1%), ‘건강검진 지원’이 8명(6.1%), ‘의료비 지원’이 16명(12.1%), ‘간병서비스’가 1명(0.8%), ‘주거비 지원’이 28명(21.2%), ‘여가 생활 지원’이 1명(0.8%)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근로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생활상담’이 12명(14.1%), ‘취업알선’이 27명(31.8%), ‘민

원대행'이 3명(3.5%), '급식, 부식지원'이 8명(9.4%), '건강검진 지원'이 5명(5.9%), '의료비 지원'이 9명(10.6%), '주거비 지원'이 19명(22.4%), '여가생활 지원'이 1명(1.2%)으로 나타났다. 근로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의 경우, '생활상담'이 5명(10.6%), '취업알선'이 8명(17.0%), '민원대행'이 2명(4.3%), '이발, 세탁, 목욕'이 5명(10.6%), '급식, 부식지원'이 4명(8.5%), '건강검진 지원'이 3명(6.4%), '의료비 지원'이 7명(14.7%), '간병 서비스'가 1(2.1%), '주거비 지원'이 9명(19.1%)로 나타났다.

〈표 3-44〉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빈도(%)
생활상담	17(12.9)
취업알선	35(26.5)
민원대행	5(3.8)
이발, 세탁, 목욕	5(3.8)
급식, 부식지원	12(9.1)
건강검진 지원	8(6.1)
의료비 지원	16(12.1)
간병서비스	1(0.8)
주거비 지원	28(21.2)
여가생활 지원	1(0.8)
무응답	4(3.0)
계	132(100.0)

〈표 3-45〉 근로여부에 따른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빈도(%)	
	근로하고 있음	근로안함
생활상담	12(14.1)	5(10.6)
취업알선	27(31.8)	8(17.0)
민원대행	3(3.5)	2(4.3)
이발, 세탁, 목욕	0(0.0)	5(10.6)
급식, 부식지원	8(9.4)	4(8.5)
건강검진 지원	5(5.9)	3(6.4)
의료비 지원	9(10.6)	7(14.7)
간병서비스	0(0.0)	1(2.1)
주거비 지원	19(22.4)	9(19.1)
여가생활 지원	1(1.2)	0(0.0)
무응답	1(1.2)	3(6.4)
계	85(100.0)	47(100.0)

5. 관계 및 만족도

1) 지역사회/이웃주민과의 관계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신뢰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평균 2.14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1.61점, ‘일 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는 2.23점으로 나타나 신뢰에 대한 항목의 경우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2.91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는 2.78점, ‘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는 2.97점으로 네트워크는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근로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평균 2.28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1.71점, ‘일 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는 2.36점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는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

뉘 먹는다'는 2.97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는 2.87점, '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는 3.02점으로 나타났다.

근로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의 경우, '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평균 1.95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1.47점, '일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는 2.04점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는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2.82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는 2.66점, '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는 2.92점으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

(단위 : 점)

구분		문항별 평균	전체평균
신뢰	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2.14	2.44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1.61	
	일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	2.23	
네트워크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	2.9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	2.78	
	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	2.97	

주 : ①전혀 하지 않는다 ②거의 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가끔 하고 있다 ⑤자주 하고 있다

〈표 3-47〉 근로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

(단위 : 점)

구분		평균	
		근로하고 있음	근로안함
신뢰	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2.28	1.95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1.71	1.47
	일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	2.36	2.04
네트워크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	2.97	2.82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	2.87	2.66
	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	3.02	2.90

주 : ①전혀 하지 않는다 ②거의 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가끔 하고 있다 ⑤자주 하고 있다

2) 주거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주택 및 임시주거 입주 후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 ‘전반적인 생활’, ‘자활의지’, ‘심리적 안정’, ‘가족관계 회복’, ‘전반적인 주거환경’, ‘이웃주민과의 관계’,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이다. 먼저, ‘전반적인 생활’에서는 3.63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일(빨래, 청소 등)’의 만족도는 3.54점, ‘부업일(식사준비 등)’의 만족도는 3.55점, ‘저축 및 생활비 절약’ 만족도는 3.28점으로 나타났다. ‘자활의지 강화’의 만족도는 3.60점, ‘심리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3.51점,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만족도는 3.30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거주환경’만족도는 3.57점이며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46점, ‘주위환경’은 3.51점으로 나타났다.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3.37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만족도는 3.73점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른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근로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는 3.75점, ‘가사일(빨래, 청소 등)’의 만족도는 3.63점, ‘부업일(식사준비 등)’의 만족도는 3.65점, ‘저축 및 생활비 절약’ 만족도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자활의지 강화’의 만족도는 3.74점, ‘심리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3.64점,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만족도는 3.39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거주환경’만족도는 3.63점이며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51점, ‘주위환경’은 3.57점으로 나타났다.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3.42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만족도는 3.82점으로 나타났다.

근로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는 3.45점, ‘가사일(빨래, 청소 등)’의 만족도는 3.42점, ‘부업일(식사준비 등)’의 만족도는 3.40점, ‘저축 및 생활비 절약’ 만족도는 3.15점으로 나타났다. ‘자활의지 강화’의 만족도는 3.40점, ‘심리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3.32점,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만족도는 3.16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거주환경’만족도는 3.48점이며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38점, ‘주위환경’은 3.41점으로 나타났다.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3.29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만족도는 3.29점으로 나타났다.

〈표 3-48〉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평균
전반적인 생활	3.63
가사일(빨래, 청소 등)	3.54
부업일(식사준비 등)	3.55
저축 및 생활비 절약	3.28
자활의지 강화	3.60
심리적 안정	3.51
가족관계 회복	3.30
전반적인 거주환경	3.57
주택시설	3.46
주위환경	3.51
이웃주민과의 관계	3.37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3.73

주 : ①아주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아주 만족

〈표 3-49〉 근로여부에 따른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평균	
	근로하고 있음	근로안함
전반적인 생활	3.75	3.45
가사일(빨래, 청소 등)	3.63	3.42
부업일(식사준비 등)	3.65	3.40
저축 및 생활비 절약	3.36	3.15
자활의지 강화	3.74	3.40
심리적 안정	3.64	3.32
가족관계 회복	3.39	3.16
전반적인 거주환경	3.63	3.48
주택시설	3.51	3.38
주위환경	3.57	3.41
이웃주민과의 관계	3.42	3.29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3.82	3.29

주 : ①아주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아주 만족

6. 소결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를 살펴본 결과 입주자의 73.3%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노숙인의 경우, 주택관련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지지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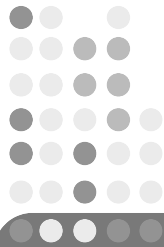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이 필요로 하는 주택관련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한 ‘거처찾기’, ‘계약’, ‘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 ‘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구비, 지원서비스 연결)’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 서비스로는 ‘심리적인 지지와 상담’, ‘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참여와 활동’, ‘복지관련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생활상담’, ‘취업알선’, ‘민원대행’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수준은 ‘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2.14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1.61점)’, ‘일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2.23점)’ 등의 신뢰 보다는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2.91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2.78점)’, ‘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2.97점)’ 등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생활’에서는 3.63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일(빨래, 청소 등)’의 만족도는 3.54점, ‘부업일(식사준비 등)’의 만족도는 3.55점, ‘저축 및 생활비 절약’ 만족도는 3.28점으로 나타났다. ‘자활의지 강화’의 만족도는 3.60점, ‘심리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3.51점,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만족도는 3.30점이며 ‘전반적인 거주환경’만족도는 3.57점이며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46점, ‘주위환경’은 3.51점으로 나타났다.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3.37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만족도는 3.73점으로 나타나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의지 강화, 심리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결과분석 |



IV.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분석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실무자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무자는 총 4명, 입주자는 18명이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주요내용은 첫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목적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지역사회정착의 관점과 단순한 거주 목적인 주택의 관점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거주지 이전의 욕구, 셋째,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의 사례관리 여부와 유형, 넷째,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점, 다섯째,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4-1〉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1. 매입임대주택 거주 목적	
1) 지역사회정착의 관점 vs 주택의 관점	
2) 현재 거주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 일자리, 자녀교육 등
3) 현재 거주지의 좋은점	
4) 현재 거주지의 불편한 점	■ 주거환경, 자녀교육, 직업 및 소득, 기타
2. 거주지 이전 욕구	
3. 사례관리의 유형	■ 일상생활지원, 정보 등
4. 지역사회정착에 어려운 점	■ 이웃과의 관계 및 소통 등
5.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방안	■ 거주자 선정기준 개선, 주거환경, 일자리, 이웃과의 관계 및 소통 등

1.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1) 일반현황

현장전문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 단신남성 노숙인 대상 현장전문가 2명, 모자가구 노숙인 대상 현장전문가 1명, 여성노숙인 대상 현장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노숙인대상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일선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였고 입주자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정착의 요건 등에 대해 인터뷰 하였다. 첫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목적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지역사회정착의 관점과 단순한 거주 목적인 주택의 관점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거주지 이전의 욕구, 셋째, 매입임대주택 실시기관의 사례관리 여부와 유형, 넷째,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운점, 다섯째,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4-2〉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일반현황

	구분	성별	업무	매입임대주택 실무경력
1	현장전문가 A	남	매입임대주택 (구세군서대문사랑방)	3년
2	현장전문가 B	남	매입임대주택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개월
3	현장전문가 C	여	매입임대주택 (현돌회)	2년 3개월
4	현장전문가 D	여	매입임대주택 (열린여성쉼터)	1년

2) 주요 내용

(1) 매입임대주택 거주 목적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노숙인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 사업의 실패,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은 이들에게 현재의 불안한 상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향후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 기반이 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거주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 될 수 있다. 첫째는 자활도모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관점과 둘째,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의·식·주 해결을 위한 거주개념의 주택 관점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관점과 단순히 거주개념의 주택관점으로 구분하였을 때 노숙인의 특성에 따라서 목적도 다르게 나타났다.

① 지역사회정착의 관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주택지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처음 정착하게 된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었다.

모자가정의 경우 지역사회정착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 교육 문제, 교우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계,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매입 임대주택 거주 목적이 지역사회정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 내 용 〉

모자가정의 경우는 달라요 똑같이 들어갈 때는 그 동네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나갈 때는 그 동네를 안 떠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같으면 멀리 가고 싶을거 같거든요. 생각하면 왜 좋게 나가시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을 얻는다면 다른 곳을 얻거나 가시겠구나 하면 쉽터 가까운 곳이라든지 매입 가까운 데 얻으세요 그거 주안점이 아이들 같아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마찬가지로 속마음은 주택의 관점이신거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도 아이들의 교육문제, 아이들의 친구관계, 학교성향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다시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지금 거기서 나가셔서 한 두분 빼고는 다 그 동네 사세요. 멀리 안 가셨어요.

(현장전문가 C)

② 거주목적에 위한 주택

단신남성노숙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히 거주개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신남성노숙인은 부양가족, 자녀 등이 없이 홀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계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신남성노숙인은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직장과의 거리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소통은 없으며 단절, 분리되어 있었다.

〈 내용 〉

제가 보기엔 주택의 관점인거 같아요. 왜냐하면 노숙인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이거니까 본인이 고를 수 있는 한정된 공간에 지역에 거기에 맞게끔 가지거든요. 본인이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게끔 맞추다 보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착을 하거나 흡수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장전문가 A)

〈 내용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성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매입임대 들어가서 직장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떠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현장전문가 B)

(2) 거주지 이전욕구

거주지 이전의 욕구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단신남성노숙인이 해당되고 그 주요 이유는 경제활동, 일자리 등이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본인에게 맞는 일 자리를 찾기관 쉽지 않다. 따라서 선택권이 넓은 강남권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노숙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이다. 처음 입주할 때와는 달리 생활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주택노후화, 주거환경의 열악 등이 거주지 이전의 욕구를 높이는 주요요인이며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 〉

그 주택에서 살 때 만족도 그거에 따라서 정착을 하느냐 떠나느냐인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때는 쉼터생활을 그만하고 싶고 독립된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자리가 나오면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순서가 됐다면 들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거든요. 우선 들어가고 보는데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정말 좋은 혜택을 매입임대라는거에 있어서 받고 있고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함이 없진 않겠지만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 이웃간에 좋은것들을 경험하면 거기서 계속 정착하길 원하시고 노력하시는거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갔는데 임대료 싸다고 들어갔는데 맨날 물새고 고쳐달라 했더니 계속 안 고쳐주고 주인이 있으면 바로 고쳐줄텐데 LH는 진짜 안 고쳐주세요 그게 맨날 싸울일이거든요. 잘 안 고쳐주시고 기관에 이야기 했는데 기관 선생님들도 힘들고 이게 이제 계속 안되고 옆집이랑 싸우게 되고 이러면 정착 이런 관점을 떠나서 아예 주택의 관점도 없어지는거 같아요. 그때는 주택의 관점만 있으면 하여튼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거 없이 다시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리하는 기관들이 정서적으로 라던지 지지해 드리고 이웃간에 잘 지내게 만들어 드리고 계속 그런 어떤 지지가 있으면 전 그곳에서 정착을 하시기가 쉽지 않나 정착을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현장전문가 C)

(3) 사례관리

매입임대주택 실무자들은 정기적인 입주자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모임을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원, 입주자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들은 이러한 사례관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관의 물품지원, 지지 등은 선호하지만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개입(간섭이라고 생각함) 등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사례관리자 보다는 동일공간에 입주하고 있는 동거인 또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또 다른 입주자 상호간의 관계가 더 밀착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 〉

개입하는거 자체를 너무 싫어하세요 지원받는 거에선 너무 좋아하시고요. 상담한다던가 뭔가를 하는거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임대 담당자로 들어왔을 때 계속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어머니들 저도 이 시간에 나오는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저 여기 나와서 야근하는거 수당도 안받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중략) 그러니까 여자들이라 ‘미안한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본인들 때문에 제가 나오는 거니까. 입주자회가 끝났는데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네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례관리를 깊이 들어가기 위해 직장이나 급여 저축부분 문제라든가 터치 할 때는 반감이 좀 심하세요.

(현장전문가 C)

(4) 지역사회정착의 어려움점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의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소통 및 관계형성으로 나타났다. 단신남성노숙인의 경우, 가족해체, 가족과의 단절, 오랜기간 동안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여 이웃과의 교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등이 어렵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등은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입임대주택 현장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약하지만 자치회 모임, 또는 직장 내 동료등과 간헐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 〉

혼자서 개인으로 원룸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에다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요. 직장동료들을 기본적으로 그런게 있고 두번째로는 또 나이 얘기를 안할수 없는게 평균연령이 52세가 넘어요. 대부분 혼자 사는 독거, 물론 가족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략) 그러면 50대 넘는 분들이 혼자 생활하시면서 뒷집 아래집 옆집하고 절대 거의 얘기안합니다 혼자 생활하세요. 직장도 혼자 갔다 혼자 오시고 그나마 하소연이나 다른 이야기 하실때는 자치모임할 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거나 이 정도이지 이웃주민하고의 의사소통은 별로 없어요.

(현장전문가 C)

(5)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방안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예를들면 3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데 금융자산(3,000만원), 근로소득(3인가구 230만원)의 기준은 이들의 근로의욕과 저축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정책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에 문화, 사회관계, 신용회복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이들의 자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도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폭을 넓혀주는거죠. 재산의 경우도 현재 3인가구 기준 230만원 보다 좀 더 완화된 300만원이어도 입주가 가능하게해둔다면 꾸준히 저축하여 자활할 수 있는데...매입임대는 월세를 내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개념의 매입임대주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냥 일반인이 전세를 얻으려면 너무 비싼데 전세로 장기전세같이 아파트 아니어도 똑같이 매입 같은 세대인데 전세로 돌려주는 뭐 5년이어도 좋고 2~3년이어도 좋고 전세금이 그대신 되게 저렴해야겠죠. (중략) 입주자들이 매입임대주택 월세를 모아 전세로 전환하는 주택으로 입주한다던지..

(현장전문가 C)

〈 내용 〉

주거지역 말고 주거안정이 되면 일자리가 문제고, 취업안정이 되면 주거가 문제가 되고 양쪽이 함께 해결하기엔 좀 제한적이죠.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선 힘들지 않나 싶어요.

(현장전문가 A)

2. 노숙인 포커스그룹인터뷰

1) 일반현황

노숙인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단신남성노숙인 14명과 모자가정 여성노숙인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여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은 매입임대주택의 거주목적, 거주지 이전욕구, 사례관리, 지역사회정착의 어려운 점, 개선 방안 등이다.

〈표 4-3〉 노숙인 포커스그룹 일반현황

	구분	성별	연령	임대주택 거주기간	현재직업	거주지역
1	입주자 A	여	39세	4년1개월	보험회사	은평구
2	입주자 B	여	56세	6년 4개월	공공근로	은평구
3	입주자 C	여	41세	1년 1개월	자활근로	은평구
4	입주자 D	여	50세	2년10개월	장례도우미	은평구
5	입주자 E	남	61세	5년	시니어일자리	강서구
6	입주자 F	남	52세	4년	공공근로	강남구
7	입주자 G	남	46세	1년	기초수급	성북구
8	입주자 H	남	43세	3년	운전	강남구
9	입주자 I	남	60세	6년	기초수급	강서구
10	입주자 J	남	53세	6년	공공근로	강서구
11	입주자 K	남	68세	2년	기초수급	강서구
12	입주자 L	남	53세	4년	기초수급	관악구
13	입주자 M	남	63세	4년	구직 중	강서구
14	입주자 N	남	59세	5년	자활근로	구로구
15	입주자 O	남	49세	4년	기초수급	강서구
16	입주자 P	남	57세	6년	공공근로	강서구
17	입주자 Q	남	42세	1년	자활근로	강서구
18	입주자 R	남	50세	6년	공공근로	강서구

2) 주요 내용

(1) 매입임대주택 거주 목적

매입임대주택은 대부분이 강서구, 은평구 등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비용이 저렴하고 생활물가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의 주택에 만족하고 있었다. 장기간의 노숙과 시설생활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가족과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시설의 노후화, 교통접근성 저하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 내용 〉

작년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2009년도 처음 들어갈때는 1년 2년 6년 있으면 이주를 해야 한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저축을 많이 안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 다녀도 수입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모아둔 돈이 없었으니까 6년차 되면 쫓겨날 판이라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오더라고요 마침 작년에 주거가 15년인가 연장이 된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어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N)

〈 내용 〉

그때 당시에 일 다니는게 다른 지역은 좀 멀고 교통도 불편해서 강남을 선택했는데, 동네는 조용하고 편한데 돈쌌어.. 물가가 비싸고, 거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거든요. 굳이 귀찮게 버스타고 가서 들고다니느니 좀 그렇고 해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H)

(2) 거주지 이전욕구

단신남성노숙인과 모자가구 노숙인의 경우 거주지 이전욕구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단신남성노숙인의 경우, 일자리 획득 기회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청·장년층에 해당하고 있었으며 고연령층의 경우, 일자리 획득 기회가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물가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전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의 경우, 주택의 근거리에서 일자리를 얻어 근로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교우관계,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근로하고 자원봉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 내 용 〉

시설이나 환경은 괜찮은데요 동네 인식도 좋고 강남이다 보니까 일을 구할 때 이력서를 놓고 면접을 보러 가면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주소를 보고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 때는 애로사항이 꽤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도 없고 물가도 비싸고 마트도 고급마트예요. 그리고 주 5일 근무하면 주말에 쉬는데 생활비에 좀 보태고자 일용직 용역을 나가려고 해도 용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나가도 거기는 선착순으로 보내주는게 아니고 얼굴보고 눈에 익은 사람만 보내주니까 빨리 나가나 마나예요. 5번 나가도 계속 퇴짜이니까 1~2년 가면은 돈을 더 못 번 데미지도 쌓이고, 더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요. 안나가는 거죠 나가도 안되니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F)

(3) 사례관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사례관리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주택에 관한 정보, 교육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지원, 안부확인, 자치모임 등 기관 위주의 사례관리보다는 노숙인 측면에서 실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또는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일자리 정보, 노후된 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 형성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 내 용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꼭 학원을 안 보내도 괜찮아요. 대신 예를 들면 멘토링제와 같이 약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을 연결 해주거나 학원 등이 좋아요. 저희 애들을 드림스타트에서 연결해줘서 멘토 학습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B)

(4) 지역사회정착의 어려운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운 점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매입임대주택은 각각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 상호간 교류와 소통이 없고 이로 인해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상호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에서 사회관계나 네트워크 형성은 시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 〉

저는 옆집 사는 동생만 알고요, 다른분들은 잘 몰라요. 지난번 건물에 불이 난 적이 있어서 옆방 동생이 다 불러냈나봐요. 겨울에 전기가 나가서 너무 추운데 신고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동생이랑 저랑 전화해서 조치를 했거든요.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없으니까. 아예 임대주택이면 아는 사람들이 뭉쳐서 들어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관 사람과 섞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 하고 전기라도 나가고 그러면 전화통화하고 회의도 할수 있으면 좋는데 그런 것을 못해요. 전체적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G)

〈 내용 〉

가장 살면서 힘든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모든 것은 정이 붙었는데 옆집과 윗집과 관계가 소통이 안되는 것이 힘들어요. 그것은 감수하고 살아야지요. 저희가 지하부터 3층건물인데 4가구가 살고 있어요. 원래 5가구가 살아야 하는데 제가 거기서 관리인을 했었어요. 근데 거주자들이 시정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 LH공사에다가 전화를 하며 아주 불통이에요. 네.네.네 말만 하고 거의 시정되는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고쳐달라고 전화 5통정도 했을거예요. 엄포도 놓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극빈층이다보니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E)

(5)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방안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완화되고, 입주기간 또한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과 근로소득에 대한 현실화는 노숙인의 자활의지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자활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서적지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웃 및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경우, 지역사회정착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노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파탄, 가정폭력, 알코올중독과 도박 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타인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내용 〉

제 생각은요 월급을 받고 대부분은 빚이 있기 때문에 빚 갚는데 돈을 쓰다보면 목돈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당장 230만원 이라고 해서 매입임대주택을 나가야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월급여가 230만원이 넘어도 모아놓은 저축액이 넘어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돈을 모아진 상태에서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H)

〈 내용 〉

우리들한테 좋은 주거 혜택을 제공해 주어 편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라고 해 준거 아닙니까? (중략) 이렇게 간담회만 하지 말고 소양교육 같은 것도 해주고 공동생활에선 어떻게 생활하는게 진정한 삶이고...(중략) 소양교육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저 가스는 겨울에 잠가라 뭐해라 선풍기는 반드시 끄고 자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웃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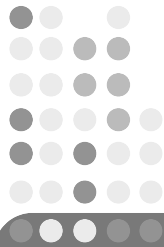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E)

3. 소결

현장전문가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어려움 등을 의견수렴하였다. 아래 표는 현장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주요내용과 노숙인이 언급하는 주요내용으로 매입임대주택 거주목적과 지역사회정착의 어려운 점, 개선방안은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거주지 이전욕구와 사례관리는 차이점을 보였다.

〈표 4-4〉 포커스그룹인터뷰 주요내용

구분	현장전문가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거주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노숙인 : 주택관점 • 가구단위 노숙인 : 지역사회정착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노숙인 : 주택관점 • 가구단위 노숙인 : 지역사회정착관점
거주지 이전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노숙인 : 일자리, 지역경제(물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 가구단위 노숙인 : 사회관계,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노숙인 : 일자리, 지역경제(물가), 주택시설 불량이 영향을 미침 • 가구단위 노숙인 : 자녀교우관계, 사회관계가 영향을 미침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모임실시, 물품지원 등에 사례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보, 주거환경 개선, 괜찮은 일자리 정보, 교육 욕구 강함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소통과 관계형성이 어렵다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소통과 관계형성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격 완화(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 주거와 일자리정책 병행추진 • 문화, 사회관계, 신용회복 등의 지원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격 완화(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 심리·치유프로그램 • 사회관계 등 프로그램



V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V.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1. 노숙인 지원 정책의 대상자기준 검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기준은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생물학적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숙인은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노숙인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숙인 지원기준이 사회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률적인 시설유형, 운영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과 특수성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적인 노숙인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노숙인, 젊은층과 고령층 노숙인, 가족노숙인 등 집단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단계적 개입

노숙인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단계적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인터뷰 결과, 입주 노숙인 대부분이 노숙인시설 퇴소 후 바로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2단계 시스템이었다. 이는 사회복귀의 준비과정이 미흡한 상태로 지역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사회적 관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숙인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시설(준비과정) ⇒ 매입임대주택(적응과정) ⇒ 지역사회정착 등의 단계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안착을 높이기 위한 주거지원제도, 심리적·정서적지지 서비스, 이웃주민과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 등이 지역사회에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경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요 욕구로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지원을 희망하였다. 만성적인 노숙생활은 대인관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의 약화를 가져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대인기피,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배제 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웃주민과의 신뢰형성,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소통, 직장동료와의 관계망형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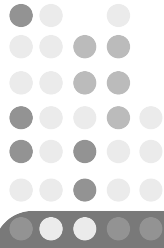
4. 노숙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주로 거리노숙인을 초점에 두고 추진되어왔다. 거리노숙인의 긴급·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노숙인시설에 머물러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숙인의 자립이나 자활을 위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서비스로 노숙인을 양산하는 회전문형상이 반복될 뿐이다.

노숙인에 대한 적정한 주거제공과 함께 보건의료,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지역사회정착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지원제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일자리 연계이다. 단순히 주거지원만으로는 노숙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연계는 필수요소이다. 주거지원 실시기관 뿐만 아니라 고용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노숙인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알코올과 도박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 기관의 정기적인 교육,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전에 예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 개최, 인식개선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 요약 및 결론 |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내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180명)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전문가(4명) 및 노숙인(18명)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욕구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사항, 경제활동,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필요요구 및 사회관계와 만족도이며,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거주목적, 거주지 이전요구, 사례관리, 지역사회정착에 어려운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욕구조사 내용 중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59.4%(107명)가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근로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평균 9.6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간 중 월평균 소득은 109.26만원이며 주요 일자리는 공공근로(서울시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 건설일용직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없는 주요 이유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56.2%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는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에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달 간(2014.8.31) 월수입은 116명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03.87만원이었고 스스로 번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공적급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한달 간(2014.8.31) 월지출액은 91.73만원이며 주거비, 식비, 보건의료비, 여가활동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노숙인은 89명(49.4%)이며, 부채발생 이유로는 생활비 충당, 사업실패(사업비 충당), 보증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로 주택관련서비스(56.1%), 일상생활지원서비스(26.7%), 사회적지지 서비스(8.3%)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관계 및 주거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신뢰에 해당하는 생활용품(2.14점)·현금(1.61점)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일자리를 소개(2.23점)한다는 낮은 반면, 음식을 나눠먹는다(2.91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한다(2.78점), 담소를 나눈다(2.97점)와 같은 네트워크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3.63점), 자활의지 강화(3.60점), 심리적 안정(3.51점), 가족관계 회복(3.30점), 전반적인 거주환경(3.57점), 이웃주민과의 관계

(3.37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3.73점)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숙인과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입임대주택의 거주목적, 거주지 이전욕구, 사례관리, 지역사회정착의 어려움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첫째, 매입임대주택의 거주목적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관점에서의 목적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관점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우관계, 학교 생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위한 지역사회정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거주지 이전욕구를 살펴보면 이전에 대한 욕구의 요인은 주거환경, 일자리 등으로 나타나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전욕구가 높았으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주거지 이전욕구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례관리의 경우, 현장전문가는 지속적인 관심과 안부확인, 물품지원 등이 노숙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노숙인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교육, 자치모임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물품지원 등도 현실에 맞는 주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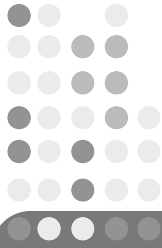
넷째, 지역사회정착의 어려움점으로는 지역사회 이웃주민과의 소통 및 관계의 단절을 꼽았다.

다섯째,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방안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준완화를 통해 이들의 근로의욕과 저축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켜야 하고, 주거지원과 일자리정책의 병행추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김혜승(2012), 외국의 주거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및 공급체계 :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 검토 및 시사점, 국토정책Brief, 제412호, 국토연구원.
- 남기철(2009), 노숙인복지론, 집문당
- _____ (2011), 한국의 노숙인복지와 주거지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31
- 남기철 외(2013),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남원석 외(2010),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토지주택연구원.
- 대한주택공사(2005),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 박신영(2007), 주거복지의 이슈와 정책과제, Working Paper Series No.2, 한국사회정책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201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부랑인·노숙인 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2011),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지침.
- 보건복지부(2011),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2),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2013), 「노숙인법률 시행 1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 서울시립대학교(2011), 서울시 도시빈곤문제 완화방안 모색, 제25회 대도시행정세미나.
- 서울특별시(2014)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서.
- 서종균·김윤이(2006), 영국 임차인 생활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주택관리공단·한국도시연구소.
- 서종녀(2010), 노숙인 주거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신명호 외(2013), 서울시 쪽방상담소 표준업무매뉴얼, 서울시·사회투자지원재단.
- 이지향 외(2008),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실태조사 및 사회개발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이태진 외(2007),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홈리스복지법 제정관련 정책토론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5), 2005년 사회복지사해외연수 보고서.
Tim Jarrett(2012), The Supporting People Programme, House of Commons Library.



No.

--	--	--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노숙인의 복지욕구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에 따른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엄정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4. 현재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 ① 건설일용직() ② 식당일() ③ 노점상() ④ 가사도우미
 ⑤ 공장근로자() ⑥ 농부, 어부, 광부() ⑦ 운전() ⑧ 사회적일자리
 ⑨ *공공근로() ⑩ 사무직() ⑪ 자영업() ⑫ 구두수선()
 ⑬ 폐지, 고물수거() ⑭ 경비원() ⑮ 기타()

※공공근로 : 서울시일자리사업, 자활사업 포함

5. 일자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 ② 직장동료와 불화
 ③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 ④ 나이가 많거나 어려서
 ⑤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⑥ 생각했던 것에 비해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⑦ 능력(전문기술)이 없어서 ⑧ 잘 모르겠다
 ⑨ 직장이 주거지와 떨어져서 ⑩ 기타()

6.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구하십니까?(2순위까지 응답하기 바람)

1순위(), 2순위()

- ① 이웃 ② 같은 동료
 ③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 ④ 임대주택운영기관
 ⑤ 고용안정센터 ⑥ 민간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소
 ⑦ 종교복지단체 상담 ⑧ 기타()

7. 귀하는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있다(→ 6_2번으로) ② 없다(→ 7번으로)

7_1. 자격증(명)은 무엇입니까? ① () ② ()

8. 지난 한달간(2014.7.31 기준) 귀하의 월수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내용	금액
① 스스로 번돈	()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원
③ 기타 공적 급여	()원
④ 가족 및 친지의 도움	()원
⑤ 종교·복지단체 지원	()원
⑥ 연금	()원
⑦ 기타	()원

9. 지난 한달간(2014.7.31 기준) 월지출이 있습니까?

- ① 있다(→ 8_1번으로) ② 없다(→ 9번으로)

9_1. 지난 한달간(2014.7.31 기준) 월지출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내용	금액
① 주거비	()원
② 식비	()원
③ 보건의료비	()원
④ 여가활동비	()원
⑤ 자녀교육(양육)비	()원
⑥ 부채상환	()원
⑦ 저축	()원
⑧ 기타	()원

10. 부채가 있으십니까? (중복 응답)

- ① 예()원(→ 10_1번으로) ② 아니오
 ③ 신용회복중 개인희생 중 ④ 파산면책 진행중

10_1.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비에 충당 ②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 ③ 의료비 충당 ④ 보증을 잘못 서서
 ⑤ 도박 때문에 ⑥ 주민등록 도용 ⑦ 기타서류명의도용 ⑧ 기타 ()

part 3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

11.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예(→ 11_1번으로) ② 아니오

11_1. 계속해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현재거주하고 있는 지역 ② 가족근처 지역 ③ 직장근처 지역 ④ 타지역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 기	
1)주택관련	①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1 : 거처찾기
	②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2 : 계약
	③거주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보증금, 임대료)
	④초기정착지원(가구, 집기 구비, 지원서비스 연결)
	⑤주택생활 유지하기(도배, 주택보수 등)
	⑥공과금 등 감액서비스 정보제공
	⑦ 공공임대주택 정보
2)사회적지지 서비스	①심리적인 지지와 상담
	②치유, 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
	③지역사회참여와 활동
	④복지관련 정보 제공
	⑤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안내, 대면, 접근 및 연락
3)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①생활상담
	②취업알선
	③민원대행
	④이발, 세탁, 목욕
	⑤급식, 부식지원
	⑥건강검진 지원
	⑦의료비지원
4)기타	⑧간병서비스
	⑨주거비지원
	⑩의복지원
	⑪여가생활지원
	①지속관리
	②생활비 신청, 지원
	③이웃주민과의 갈등 문제해결

- 출처 1. 영국 임차인 생활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주택관리공단·한국도시연구소(2006.1)
2.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2014.2)

12. 위의 보기 중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주택관련 ② 사회적 지지 ③ 일상생활지원 ④ 기타

13. 주택관련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14. 사회적 지지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15.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part 4

기타

16. 지역사회/이웃 주민(옆집)들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가끔 하고 있다	⑤ 자주 하고 있다
신뢰	1)생활용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2)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3)일자리를 서로 소개해준다					
네트 워크	4)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					
	5)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					
	6)한가할 때 담소를 나눈다					

17. 주거지원프로그램(매입임대주택/임시주거 등 입주 후), 귀하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 분	① 아주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아주 만족
1) 전반적인 생활					
1)_1 가사일(빨래, 청소 등)					
1)_2 부엌일(식사준비 등)					
1)_3 저축 및 생활비 절약					
2) 자활의지 강화					
3) 심리적 안정					
4) 가족관계 회복					
5) 전반적인 거주환경					
5)_1 주택시설					
5)_2 주위환경					
6) 이웃주민과의 관계					
7)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과의 관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4-37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임성규

편집인 김혜정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전화 02-2011-0400

팩스 02-2011-050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 명문인쇄공사(02-2275-5373)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